

민원 편람

2018.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목 차

- I. 민원처리 일반4
 - 1. 민원의 개념4
 - 가. 민원의 정의와 종류4
 - 나. 민원인의 정의5
 - 2. 민원처리 흐름도6
 - 3. 민원의 신청 및 접수7
 - 가. 민원의 신청 방법7
 - 나. 민원의 접수7
 - 다. 민원서류의 이송8
 - 4. 민원의 처리9
 - 가. 민원처리담당자의 의무9
 - 나.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9
 - 다. 민원의 처리기간9
 - 라. 민원처리의 예외11
 - 5. 처리진행상황 및 결과의 통지12
 - 가. 담당자 명시12
 - 나. 처리진행상황의 통지12
 - 다. 처리결과의 통지12
 - 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구제절차13

II. 주요 민원업무 편람15

1. [편람1] 산업단지 개발 업무15

2. [편람2]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업무27

3. [편람3] 손실보상 업무32

4. [편람4] 도로점용 관련 업무40

5. [편람5] 하천점용 관련 업무53

6. [편람6] 품질시험·검사 업무81

7. [편람7] 부실·부패 신고 업무83

[붙임] 부산국토청 민원처리기준표84

가. 민원의 정의와 종류(법 제2조 1항)

1) 민원의 정의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2) 민원의 종류

- 일반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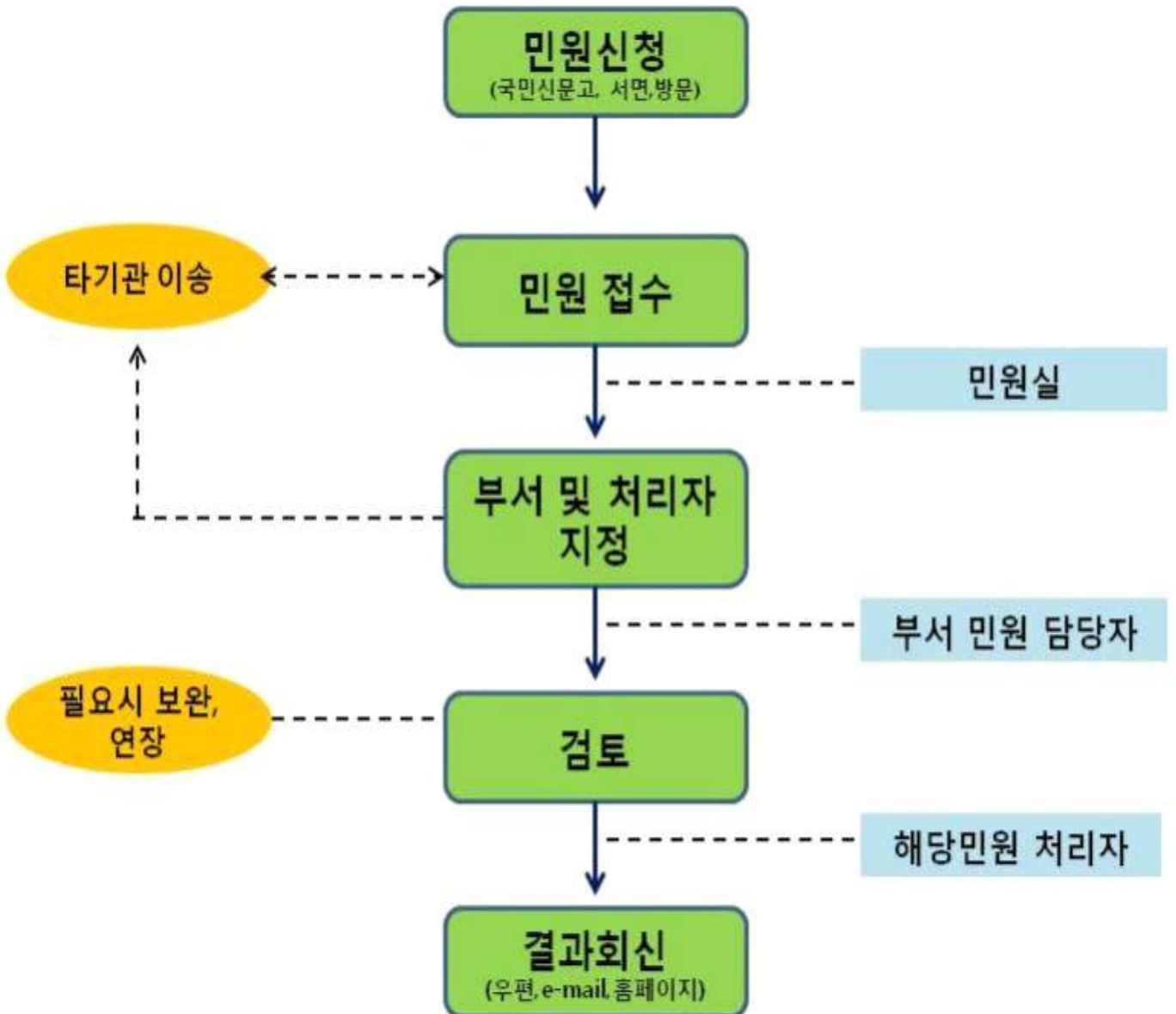
-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나. 민원인의 정의(법 제2조 2항)

-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시행령 제2조 1항)

- ①.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 ③.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



가. 민원의 신청 방법(법 제8조)

-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 구술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 행정기관의 답변이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없는 **단순 질의·상담 민원** 등

ex) 국유재산 매수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

공사 시공 및 계획에 대한 단순 질의·상담

보상금 수령 관련 문의 등

- 법 제8조에 따른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은 당해 민원 상담자 또는 전화응답 받은 사람이 **민원인의 성명 및 주소, 민원제기 일시 및 요지, 내용** 등을 즉시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센터는 이를 접수·분류(배정)한다.

나. 민원의 접수

- 1)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담당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에서 접수한다. (영 6조)
- 2) 민원을 접수하는 공무원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법 제10조)

3) 민원서류를 접수한 경우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영6조2항)

☞ **접수증을 교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영 제6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 기타민원
- 민원인이 직접 방문않고(구술·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
-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
-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

다. 민원서류의 이송

1)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문서 중 그 처리가 민원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1근무시간 이내에 이를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영 제13조제1항)

※ 다만,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1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

2) 같은 행정기관 내에서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실을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영 제13조제2항)

3)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영 제13조제3항)

4)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문서의 이송 상황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영 제13조제5항)

가. 민원처리담당자의 의무

-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4조)

나.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 1)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법 제5조제1항)
- 2)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5조제2항)

다. 민원의 처리기간

1) 질의 민원

-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영 제14조 1항)
-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 7일 이내(영 제14조 2항)

2) 건의민원

-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영 제15조)

3) 기타민원

-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영 제16조제1항)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영 제16조제3항)

4) 고충민원

-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영 제17조 1항)
-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영 제17조 4항)
-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영 제17조 1항)

라. 민원처리의 예외

-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21조)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법 제21조 제1항)
-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법 제21조 제2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법 제21조 제3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법 제21조 제4항)
-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법 제21조 제5항)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법 제21조 제6항)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법 제21조 제7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법 제21조 제8항)
-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법 제21조 제9항)

가. 담당자 명시

-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 민원문서의 보완 요구,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처리결과통지의 통지 등을 할 때에는 그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영 제31조)

나. 처리진행상황의 통지

- 1)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영 제 23조 1항)
- 2)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영 제 23조 2항)
- 3)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의 처리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영 제 23조 3항)

다. 처리결과통지의 통지

- 1)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 29조제2항)**

- 기타민원의 경우
-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 민원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2)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27조제2항)

3)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신고필증·증명서 등의 문서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27조제3항)

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35조제1항)

☞ **이의신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시행령 제40조)**

-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거부처분을 받은 날 및 거부처분의 내용

- 2) 행정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35조제2항)
- 3)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시행령 제40조제2항)
- 4)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35조제2항)
- 5)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영 제40조제3항)
- 6) 민원인은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법 제35조제3항)

II

주요 민원업무 편람

편람 1

산업단지 개발 업무

1

산업단지 (개발사업실시계획, 재생계획) 승인

1. 근거 법령

종 류 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실시계획승인	제17조	제21조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재생계획) 승인신청서 1부
- ② 위치도 1부.
- ③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 ④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 ⑤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 ⑥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등의 명세서
- ⑦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 대책에 관한 서류
- ⑧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 ⑩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⑪ 도시·군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자체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 ⑫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⑬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 ⑭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한다)

나. 처리기간 : 30일

다. 수수료 : 없음

3. 심사기준

가. 관계기관 협의 및 지자체 의견 수렴

- 1) 관계기관 : 신청서상 관련이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지자체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 3) 기술검토 : 하천국, 도로시설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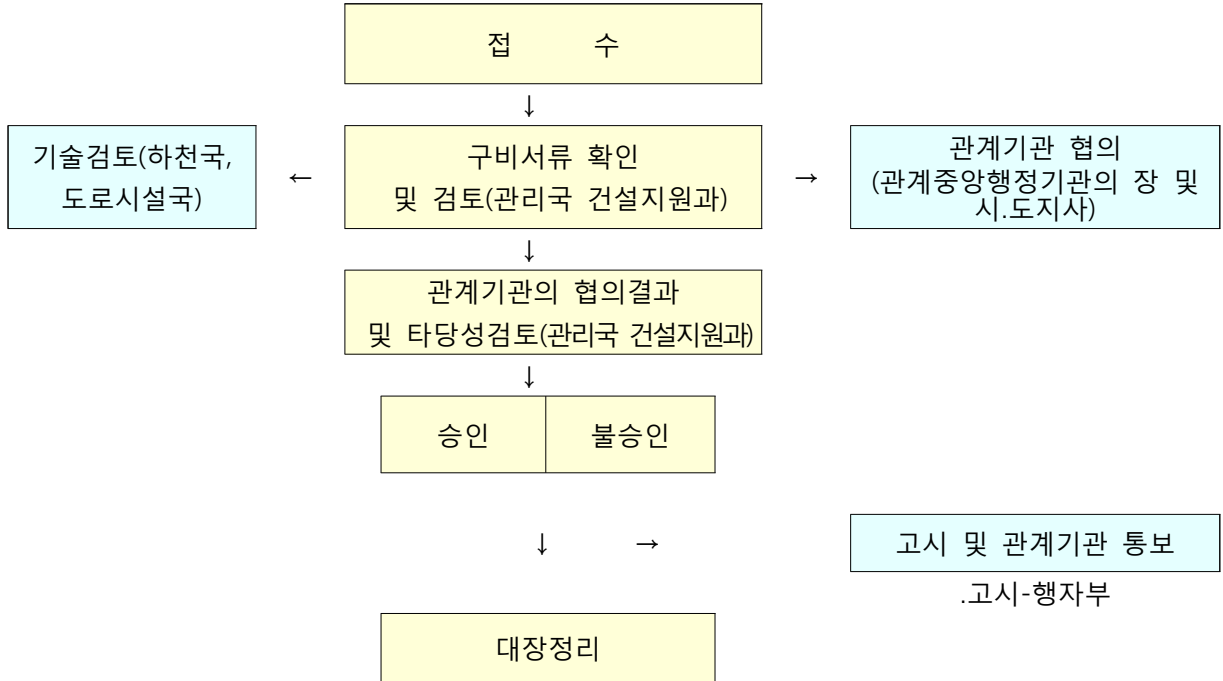
나. 국공유지 편입 시 소관 관리청과 대체 협의

다. 심사기준

- 1) 국가산업단지의 지정내용과 부합여부
- 2) 관계도면의 구조·안전 및 시행방법 타당성 여부
- 3) 사업시행의 재력충족 여부
- 4)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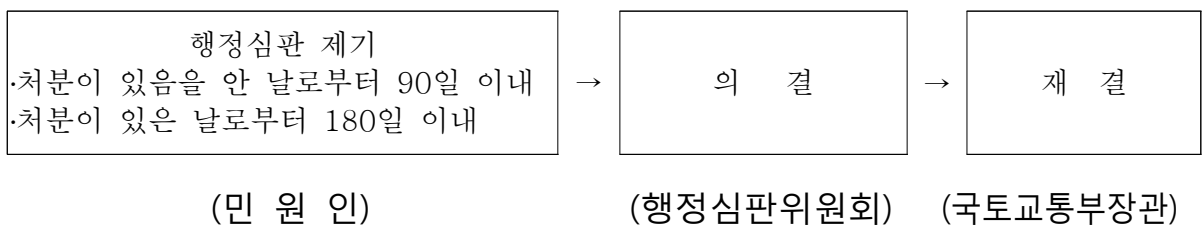
4.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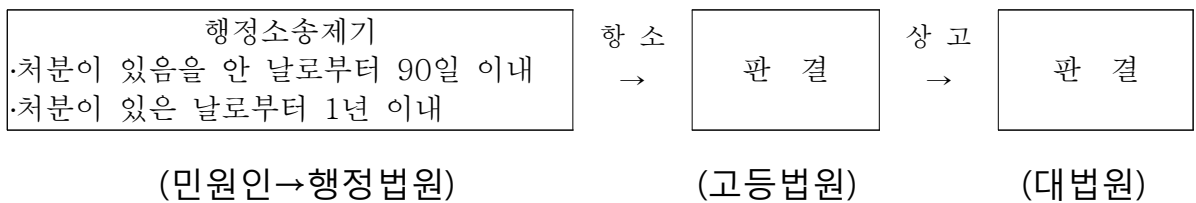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심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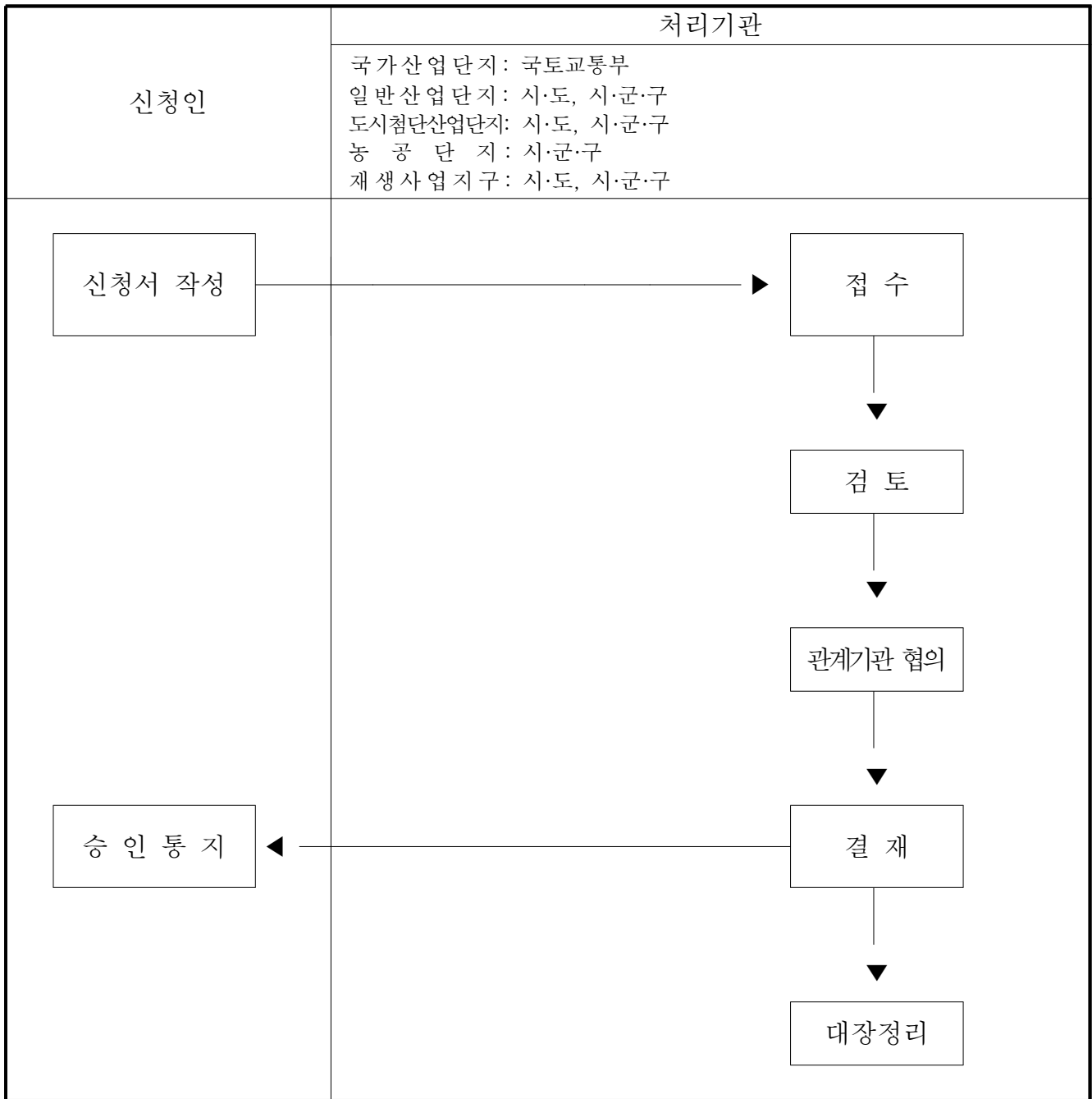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개발사업 실시계획, <input type="checkbox"/>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m ²	
시행방법						사업기간	~	
토지이용현황(m ²)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m ²)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요							
<p>「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제39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제44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p>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위치도						수수료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없음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합니다) 4.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서(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 재생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생사업지구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등의 명세서(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8.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9. 대체산업단지의 조성, 임시조업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0.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2. 산업단지개발사업(재생사업)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3.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4.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5. 재생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계획서(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6.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7.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처리기관 확인사항	지적도(「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기관이 확인합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1. 근거법령

종 류 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준 공 인 가	제37조	제36조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① 준공인가신청서 1부.
- ②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③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④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된 토지·시설등의 처분계획서
- ⑤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 (법 제16조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다만,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환지계획서 및 신,구지적 대조도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⑦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처리기간 : 30일

다. 수수료 :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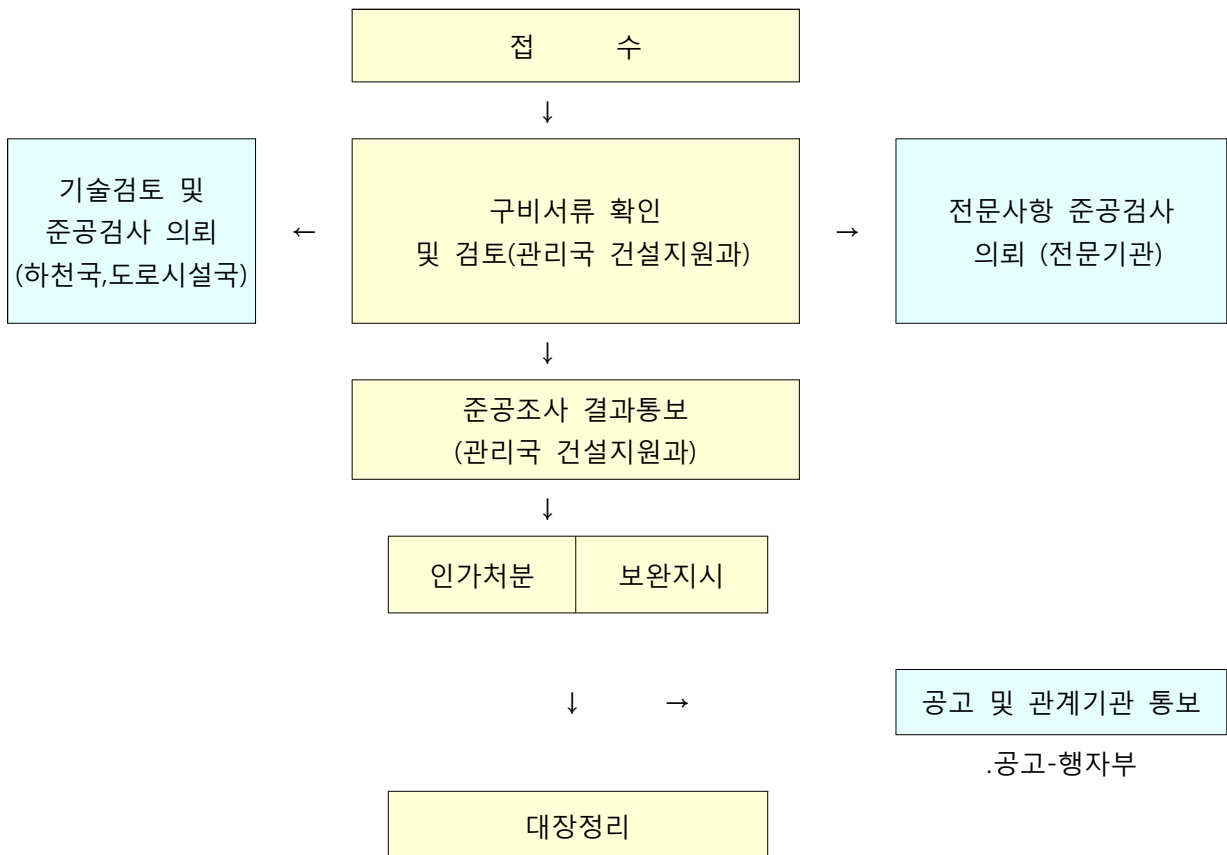
3. 심사기준

가. 설계도서 및 허가조건 등 실시계획 승인조건 이행여부

나. 구조물의 안전도 등 시공 상태 및 공공시설의 명세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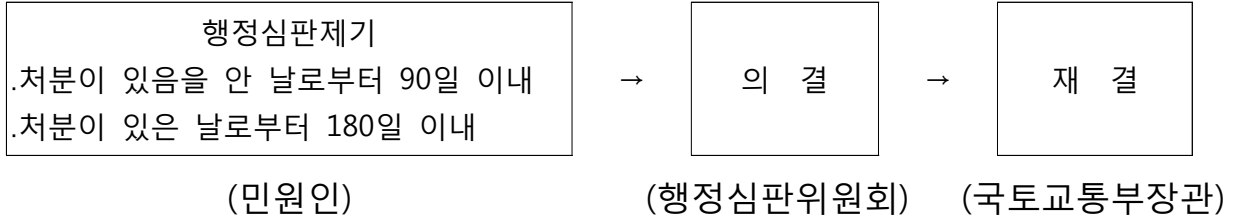
4.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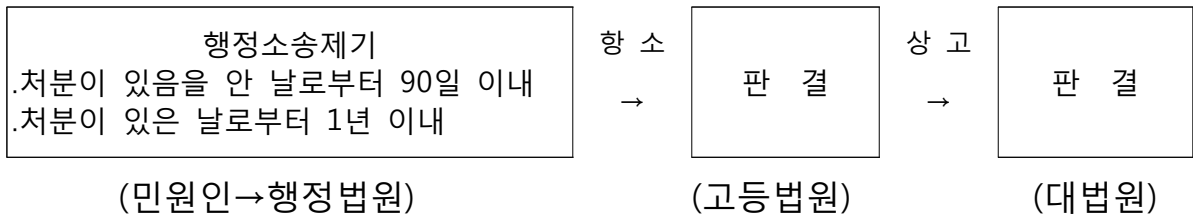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심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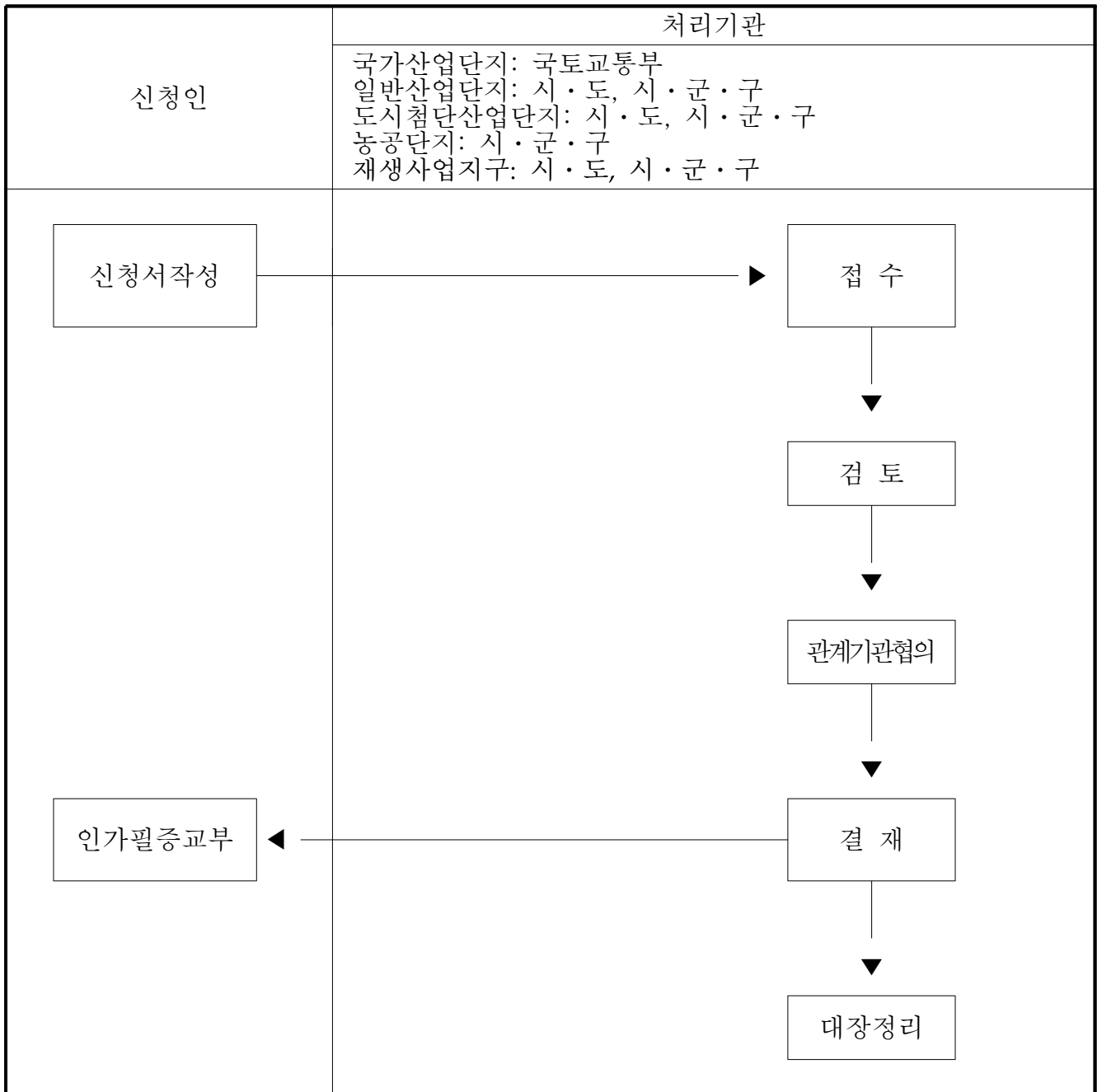


준공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사업면적	m ²				시행기간			
토 지 이 용 계 획 (m ²)	용도별							
	면적							
기 반 시 설 개 요	시설별							
	개요							
<p>「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9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44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p>								
<구비서류>							수수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토지·시설 등의 처분계획서 4.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합니다) 5. 환지계획서 및 신·구지적대조도(법 제24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공유수면매립을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54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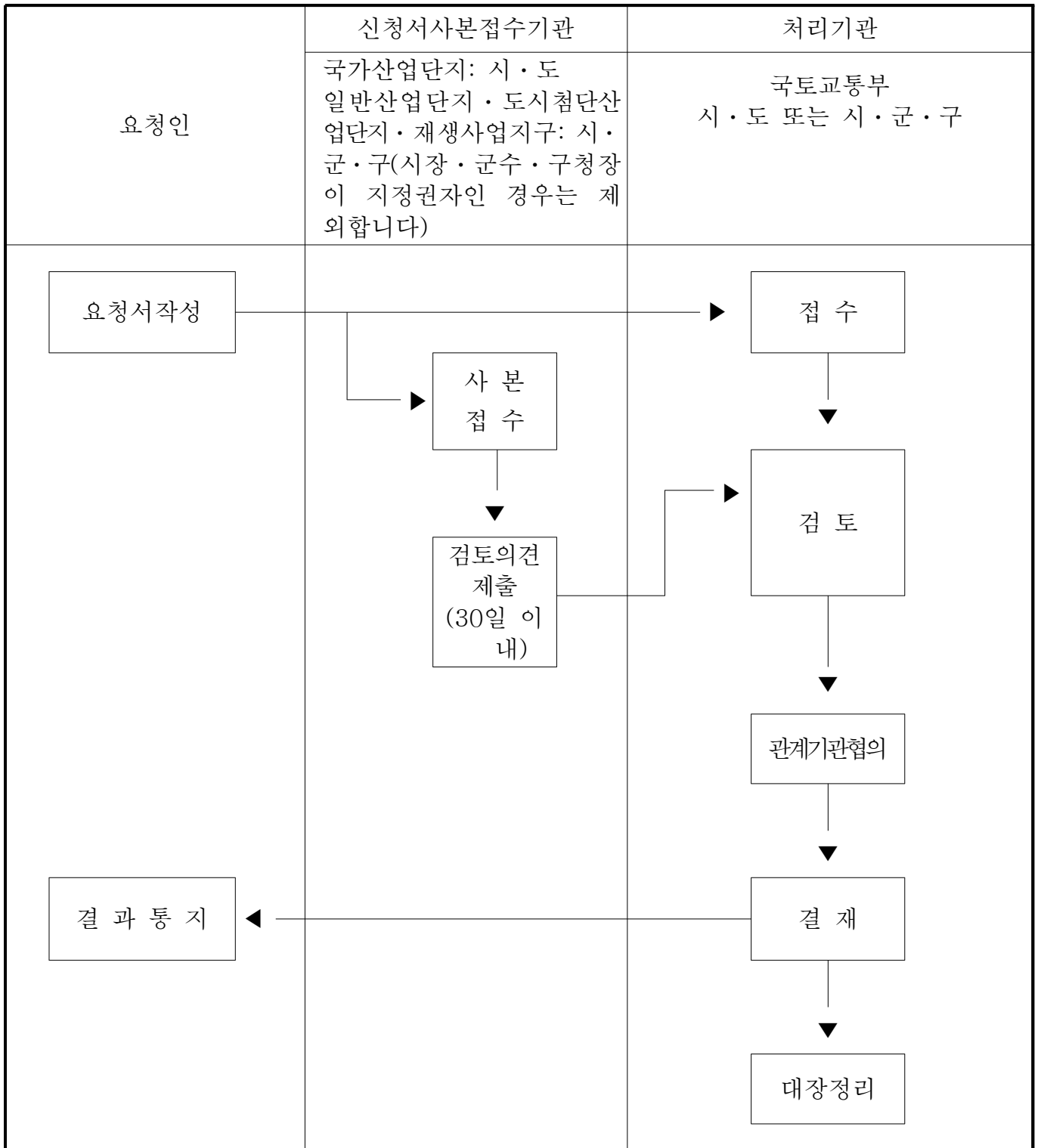


<input type="checkbox"/> 실시계획 <input type="checkbox"/> 재생시행계획 승인 신청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시행면적	m ²
기간연장 신청내역	당초	~	연장	~
	연장사유			
특기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1조제3항, ㉔제22조제3항, ㉔제22조의2제3항, ㉔제23조제3항, ㉔제44조의6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구비서류>				수수료
1. 위치도				없음
2. 신청기간 연장사유서				

210mm×297mm(신문용지54g/m²(재활용품))

이 요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1. 근거 법령

- 국유재산법 제30조 ~ 제36조
- 동법시행령 제27조 ~ 제32조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용도, 사용자등 기재)

* 국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 시 용도에 따라서 대부료 및 사용 허가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용도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함

2) 위치도(일부 면적 신청할 경우, 사용위치 및 면적산정)

* 지도 서비스 제공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화면 출력하여 위치표시 가능

나. 처리기간 : 20일

다. 수수료 : 없음

라. 사용료 : 공시지가 등에 따라 매년 징수

*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6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

3. 심사기준

가. 허가대상 재산

- 등기부상 ‘국(국토교통부)’ 으로 된 재산으로서 도로, 구거, 하천 등 타 법령에 의한 점·사용허가 대상을 제외한 행정재산

나. 허가의 심사기준

1) 행정재산의 사용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함

2) 사용허가 목적이 영구시설물이 아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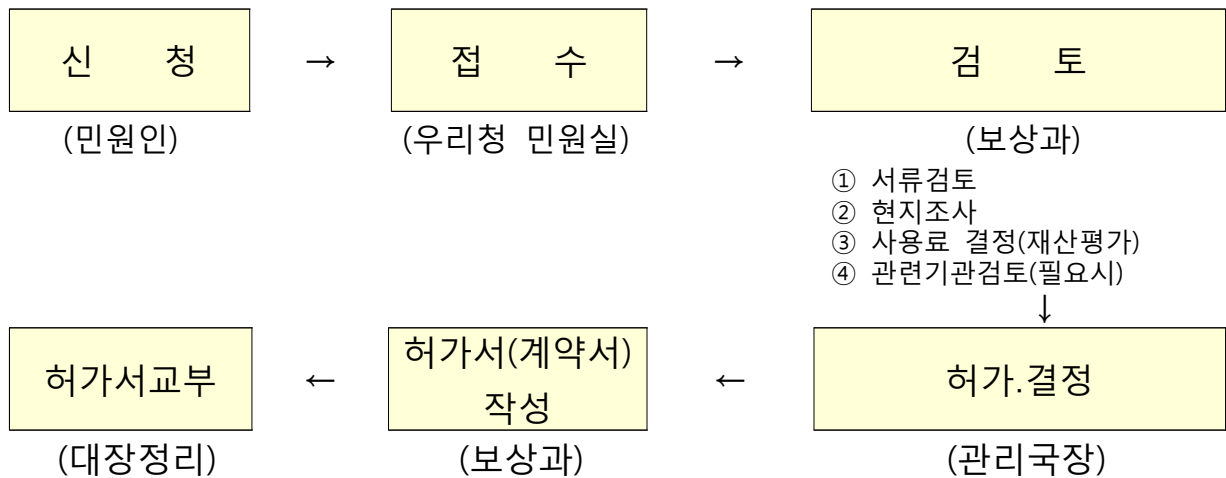
* 단,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는 제외

3) 현저한 민원의 발생요인이 없을 것

4)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하지 않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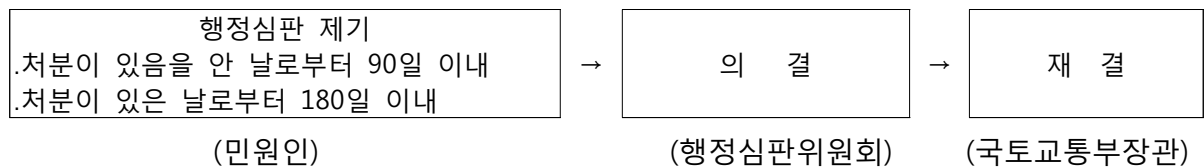
4.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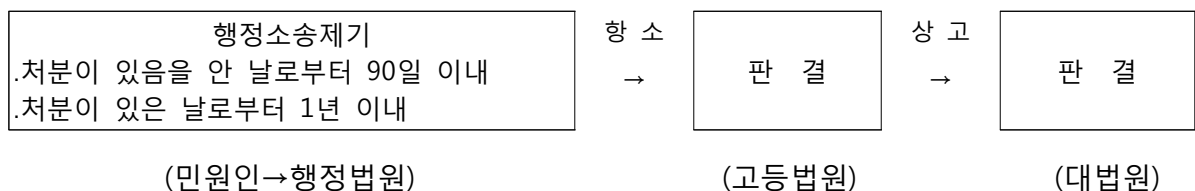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심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국유재산 **[] 사용허가**
 [] 대부 **신청서**
 [] 매수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	용도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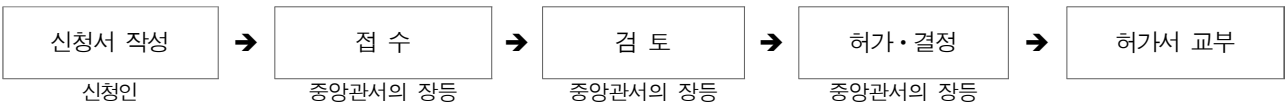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관서의 장등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	-----	-----	-----

처리절차



※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매각대금** **분할납부신청서**
 대부료 **변상금**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	신청사유	분납방법	비고
	①	②	③				
신청내용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1년에 ()회	
						1년에 ()회	
						1년에 ()회	
						1년에 ()회	
						1년에 ()회	
	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						
						()년에 ()회	
						()년에 ()회	
						()년에 ()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관서의 장등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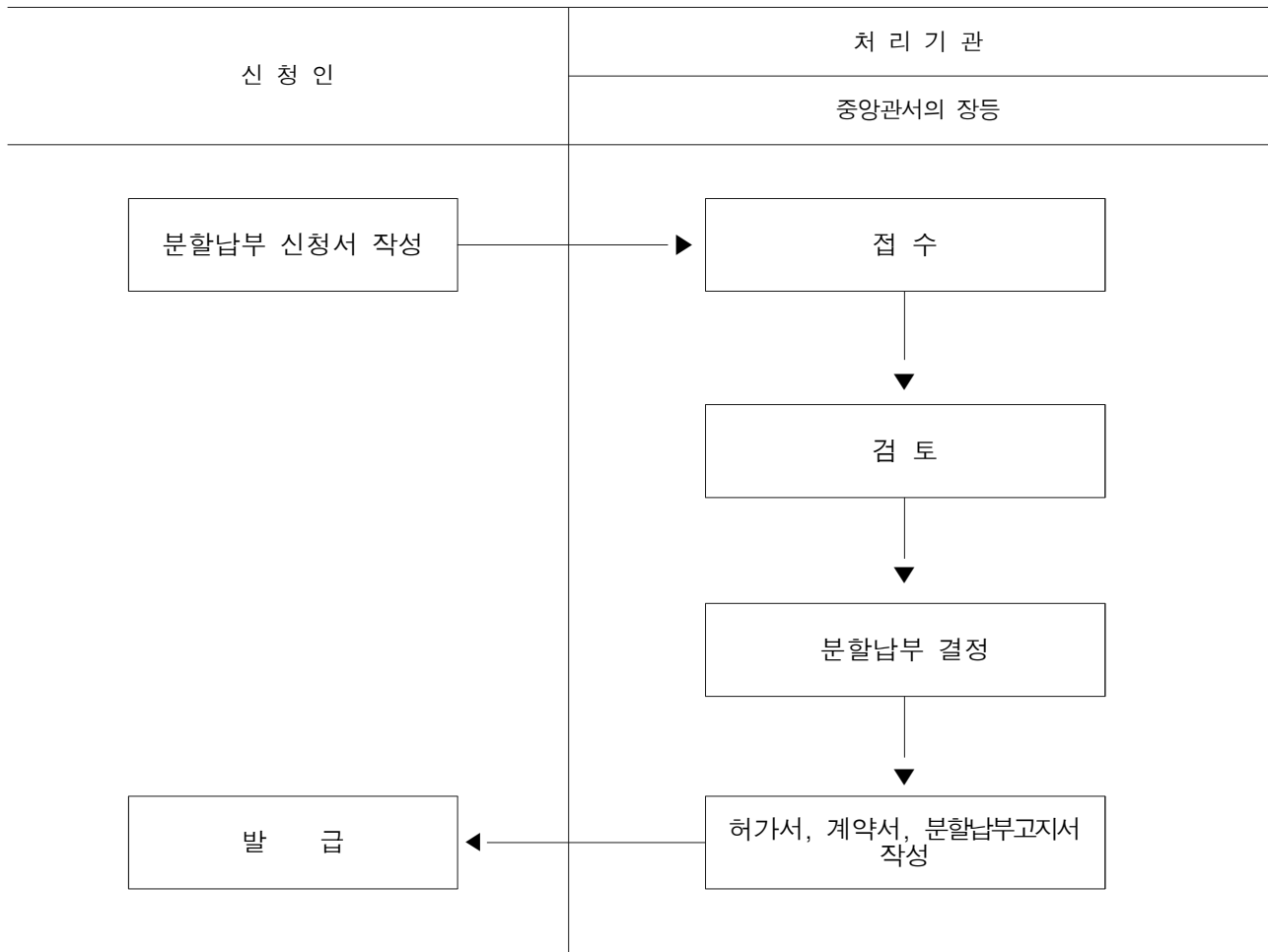
유의사항

재산이 건물 또는 공작물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은 ① 소재지, ② 지목, ③ 면적을 적고,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재산명, ② 유형(법 제5조제1항제6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③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사용료(대부료)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 매각대금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 변상금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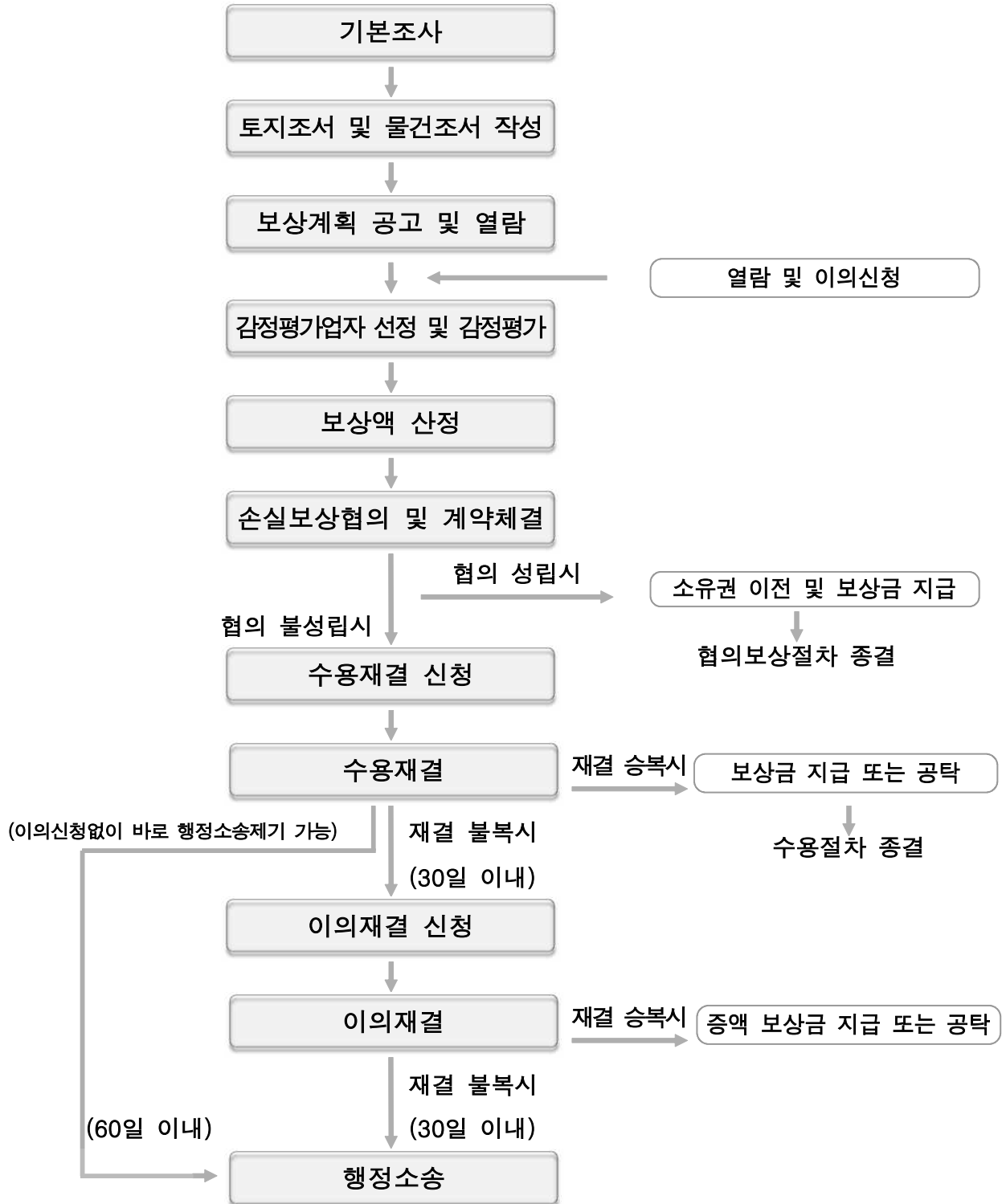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 손실보상 절차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 1) 사업개요·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 보상계획을 공고 또는 개별통지한 때에는 소유자 등이 열람하기 편리한 장소를 택하여 보상계획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3)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보상액 산정

- 1)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합니다.
- 2) 농업손실보상,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통계를 활용하여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보상하는 항목은 한국감정원(<http://www.kab.co.kr>) 홈페이지 왼쪽 하단의 <이전비, 폐업보상 등 법규보상액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 1) 보상금이 산정되면 협의기간·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보상의 시기·방법·절차 및 금액,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기재하여 별도 문서로 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기간이 지난 후에는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제3자의 권리(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 말소하여야 합니다.

5. 협의불성립시 구제 절차

가. 수용재결(행정적 구제절차)

- 1)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손실보상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 2) 재결이 신청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의뢰에 의하여 시장(행정시의 시장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포함)이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일정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공고 및 열람하도록 할 수 있음), 제출할 의견이 있으면 시장(행정시의 시장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포함)에게 열람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공고 및 열람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
- 3) 열람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는 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열람기간을 준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의재결(행정적 구제절차)

- 1)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하여 재결(이의신청재결)을 하게 됩니다.
- 2) 공탁된 보상금에 대해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면 수용재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의신청이 각하되니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가 있음을 표시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소송(사법적 구제절차)

- 1)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 이의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1. 감정평가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포함하여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에게 의뢰합니다.
2.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3.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해당 시·도지사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 1) 이주대책 수립·실시
- 2) 이주정착금 지급(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은 지급하지 않음)

구분	내 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분 •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이나 해당 사업지구의 여건상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받지 못한 분
지급 금액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 2백만원으로 함

3) 주거이전비

구 분	내 용
대상자	본 사업지구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 다만,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등에 거주한 분은 제외
지급 금액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 평균 가계지출비 X 2월분

4) 이사비

구 분	내 용
대상자	본 사업지구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자로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게 되는 분
지급 금액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4 참조)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등의 소유자는 이주대책(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됨

나. 세입자

1) 주거 이전비

구 분	내 용
대상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본 사업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분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본 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분 포함)
지급 금액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X 4월분

2) 이사비 :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와 동일

- ※ 분기별 농업손실보상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분묘이장비 단가는 **한국감정원** (<http://www.kab.co.kr>) 왼쪽 하단의 이전비, 폐업보상 등 범규보상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 근거

-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수 있으며, 잔여면적, 위치, 형상, 이용상황(용도)과 편입토지 면적과의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잔여지 여부를 판단**

나. 주요 지목별 기준

지 목	판단기준
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여면적이「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하의 토지(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그 외 지역 60㎡) - 위의 면적 이상이더라도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물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 공익사업으로 진출입이 차단되어 대지로서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
잡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의 기준 준용
전, 답, 과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여면적 330㎡ 이하 토지 -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잔여지 형상이 사각형인 경우에는 폭 5m 이하, 삼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폭이 11m 이하인 경우 부정형으로 봄 - 진출입 또는 용배수가 차단되어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여면적 330㎡ 이하의 토지 - 급경사 또는 하천으로 둘러싸여 고립되는 등 진출입이 불가능하여 이용 가치가 상실되는 경우

잔여지 매수 신청서

토지 소재지 :

본인 소유 상기 토지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_____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어 잔여지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규정에 따라 매수 요청합니다.

당 초		편 입		잔 여 지		비 고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지 번	면 적	
	m ²		m ²		m ²	
신 청 사 유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연 락 처 :

(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1 도로점용 연결허가 사전심사 신청

1. 도로점용 연결허가 사전심사제 시행 목적

- 가.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 나.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
- 다.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2. 근거 법령

종 류 별	도 로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규칙
도로등의 연결허가	제52조 및 제61조	제48조 및 49조	제26조	제4조

3.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1) 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심사 신청서
 - 2) 위치도 1부 (사업부지 표기)
 - 3) 현장사진 (진.출입로 표기)

나. 처리부서

구 분		처리기간(부서)	처리기간
국 도	기존 국도구간	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7일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구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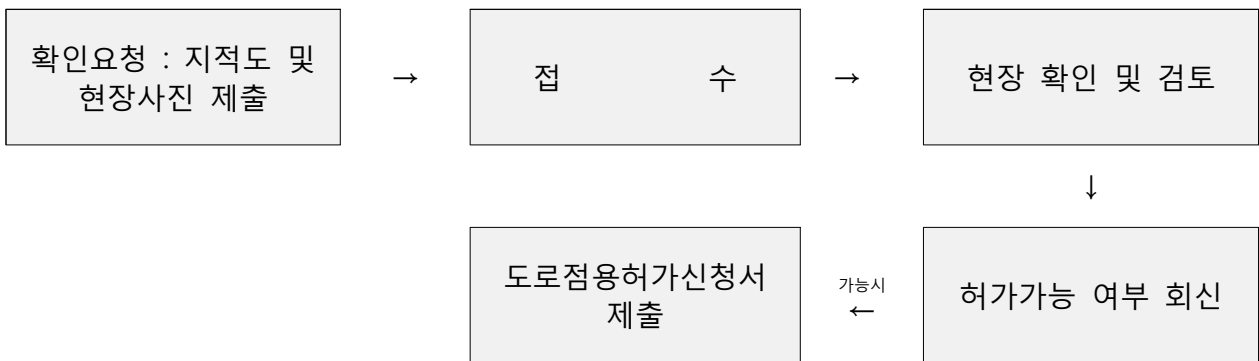
다. 처리기간 : 7일

라. 수수료 : 없음

마. 온라인 신청 안내

- <http://www.cpermit.go.kr> → 인허가신청 → 사전심사신청

4. 업무처리 흐름도



2

도로등의 연결허가

1. 근거 법령

종 류 별	도 로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규칙
도로등의 연결허가	제52조 및 제61조	제48조 및 49조	제26조	제4조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1) 도로등의 연결허가신청서
- 2) 설계도면(평면도, 종단도, 횡단도, 구조물도, 부대공사도)
- 3) 위치도
- 4) 연결계획서
 - 가)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 분석등)
 - 나) 연결로등의 설치계획
 - 다)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 라) 연결공사중의 안전관리 대책 및 교통관리 대책
 - 마)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
- 5)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나. 제출처 및처리기간

구 분		처리기간(부서)	처리기간
국 도	기존 국도구간	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21일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구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다. 수수료 : 1,000원 (수입인지)

라. 도로점용료 : 점용물 종류면적×요율×인근토지 가격(산술평균)×개월수

※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는 세입고지서로 납부

4. 심사기준

가. 설계도면과 현지위치 일치 여부

나. 연결시설물이 도로구역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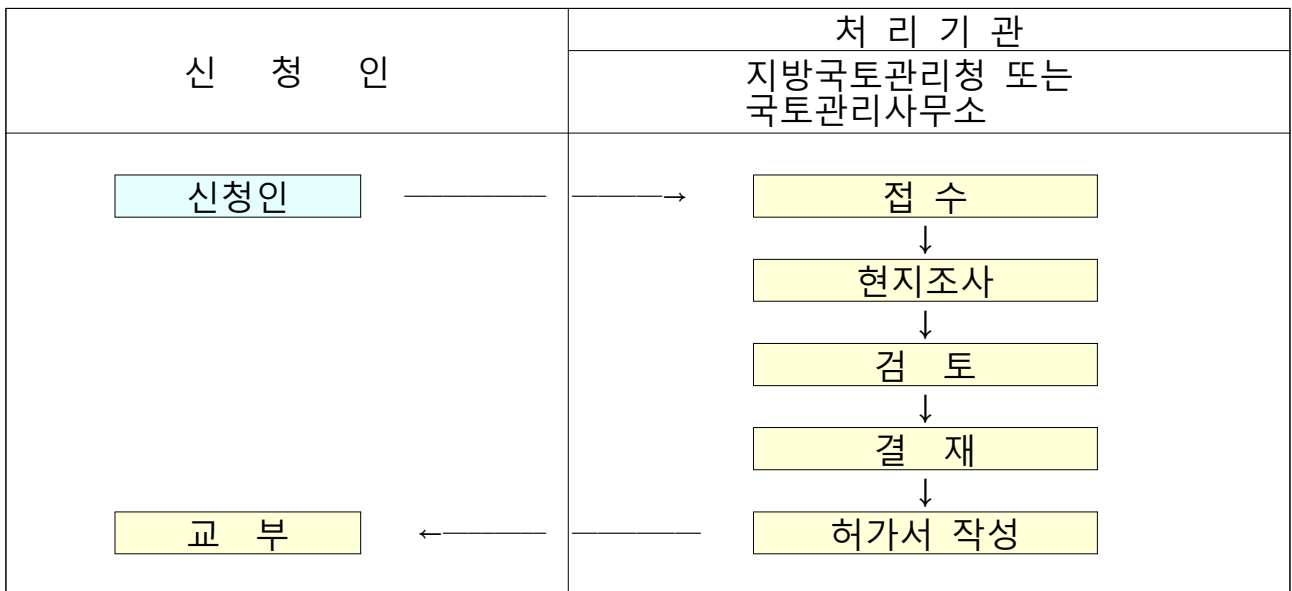
다.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등의 적합 여부

라. 도로교통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 의견조회 내용

마. 기타 도로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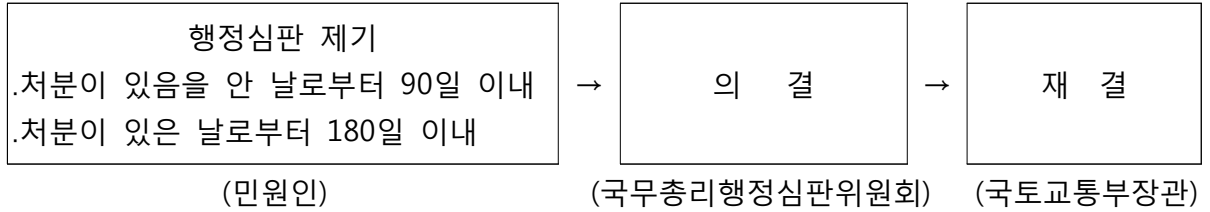
5. 업무처리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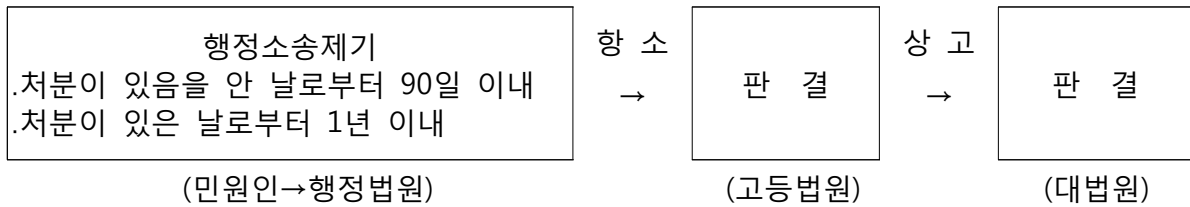


나. 통보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심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1. 근거 법령

종 류 별	도 로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도로점용허가	제61조	제54조	제26조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1)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 2) 설계도면(평면도, 종단도, 횡단도, 구조물도, 구적도) 1부
-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1부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사후 관리계획 1부 (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 5) 영 제62조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구 분		처리기간(부서)	처리기간
국 도	기존 국도구간	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7일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구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다. 수수료 : 1,000원 (수입인지)

라. 도로점용료 : 점용물 종류면적×요율×인근토지 가격(산술평균)×개월수

※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료는 세입고지서로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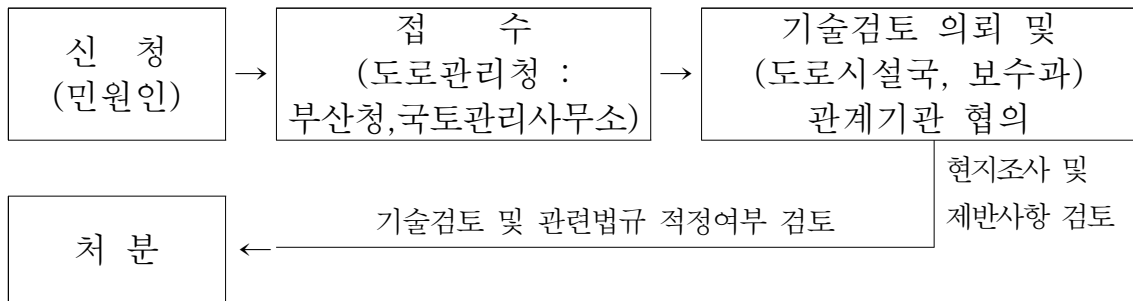
3. 심사기준

- 가. 기술검토상 도로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 나. 도로점용 지역의 도로부지인지 여부
- 다. 도로굴착 점용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사항 반영 여부
- 라. 도로점용 공사로 인한 지하매설물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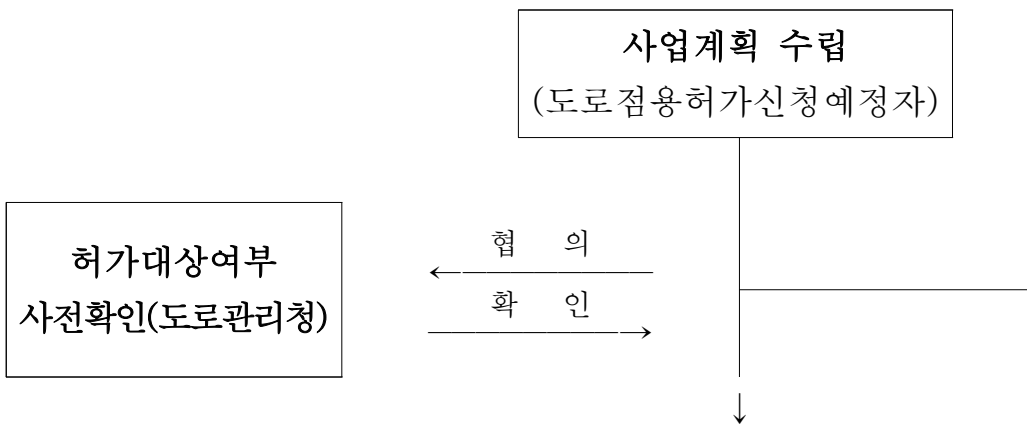
4.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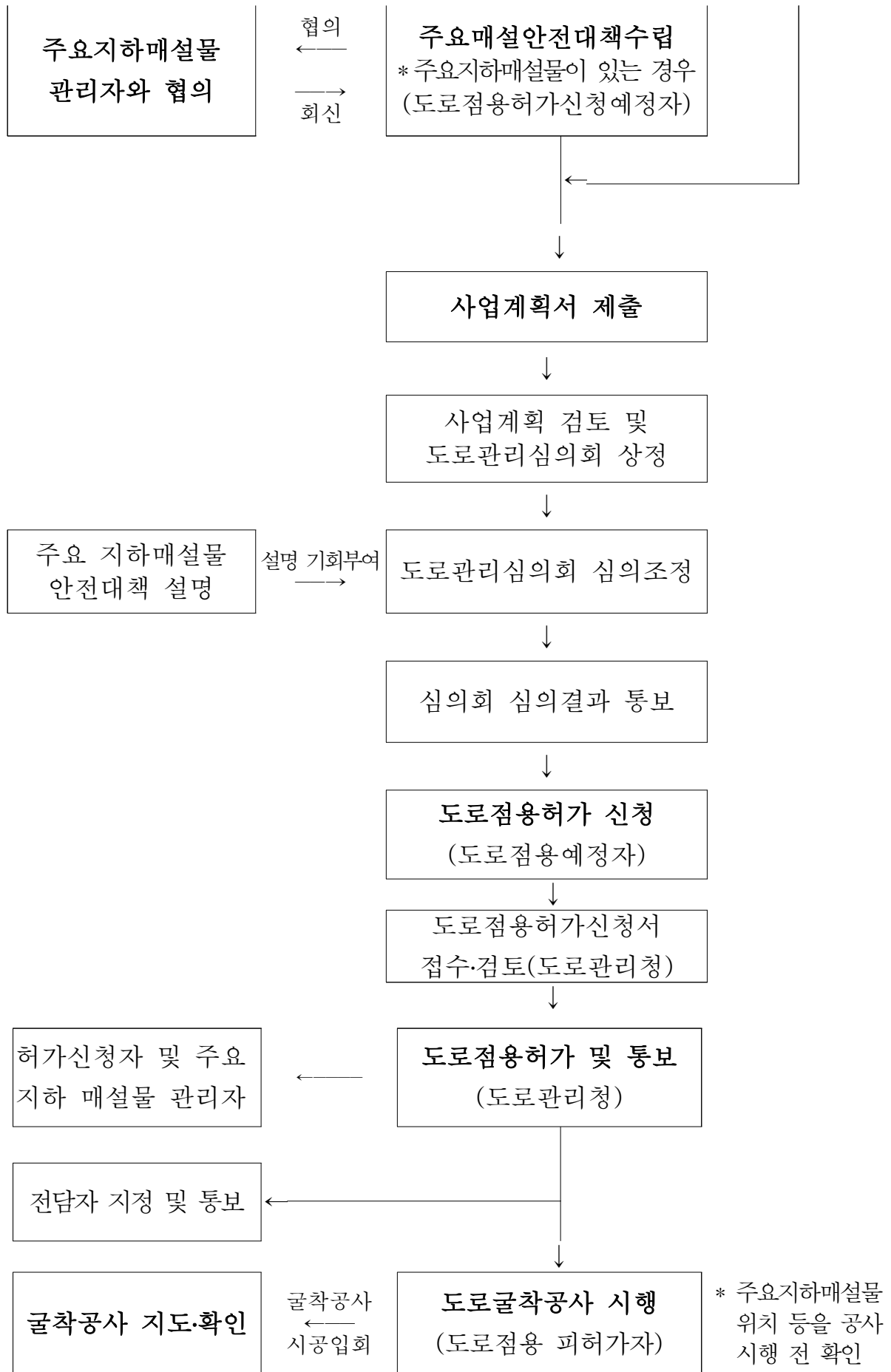
가. 업무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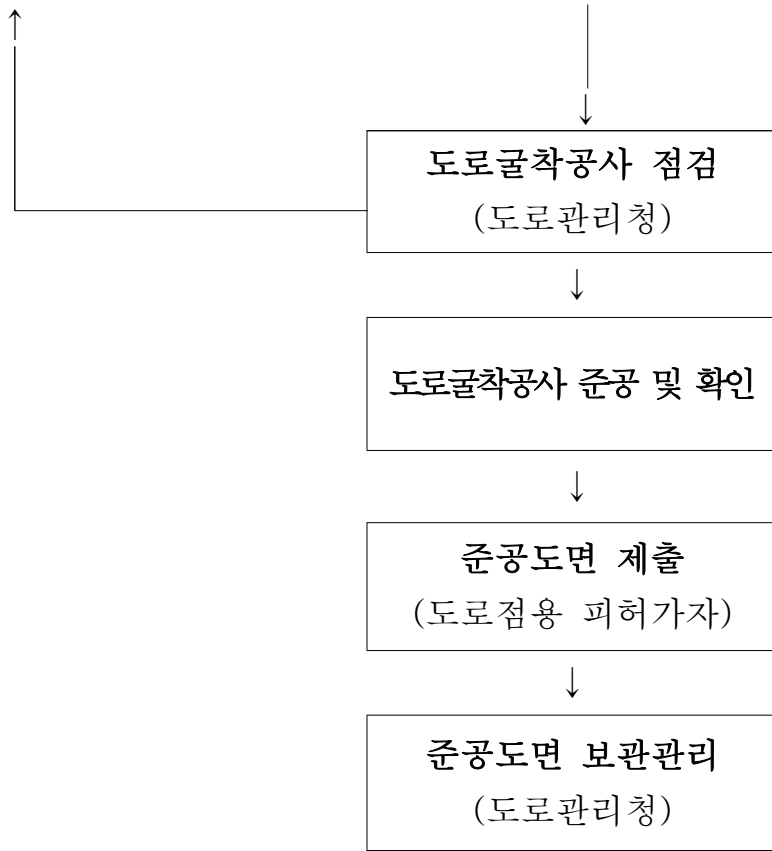
○ 일반 도로점용허가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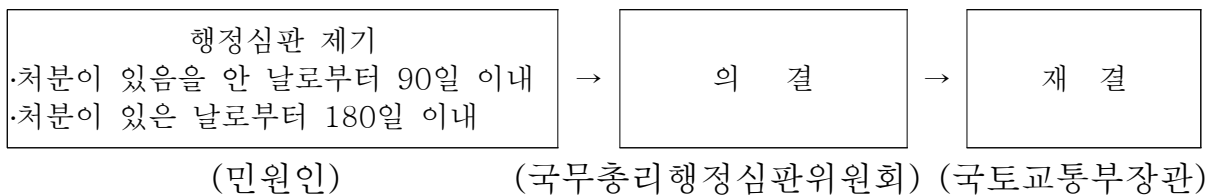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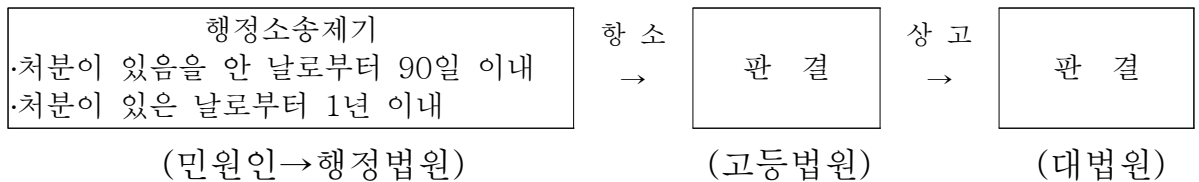


나. 통보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심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	
	①점용의 목적		
	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		
	점용기간	굴착기간	
	점용물의 구조		
	③공사의 방법		
	공사의 시기		
	④도로의 복구방법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첨부서류	<p>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p> <p>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p>	<p>⑤수수료</p> <p>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p>
------	---	--

1

하천점용허가 [토지·하천시설의 점용]

1. 근거 법령

종 류 별	하 천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하천점용허가 (토지·하천시설의 점용)	제33조	제34조	제17조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1) 하천점용허가신청서 1부.
- 2) 위치도 : 축척 1/25,000 지형도에 위치 표시
- 3) 평면도 : 축척 1/3,000 내지 1/6,000
-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득하천사용자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타 이해관계인 (어업권자 및 광업권자 등)

나. 처리기간 : 14일

다. 원상회복비 납부 (하천법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 1) 부과기준
 - 하천점용으로 인하여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 점용료의 30/100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형질 변경인 경우 : 원상복구에 드는 실제 비용
- 2) 납부방법 : 하천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증서 또는 현금
- 3) 기 타 : 원상복구 완료 후 또는 원상회복이 필요 없는 경우 반환

라. 수수료 : 점용료의 1/1,000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지개량조합 제외

2. 심사기준

가.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

나. 관련법규에 적정한 지 여부

* (하천법 제 4조) 하천 및 하천수의 사용은 국가의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이어야 하며,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 사권을 행사할 수 없음

다. 당해 점용으로 인한 공공사업 수행의 지장 유무

라. 당해 점용으로 인한 하천시설의 손괴 우려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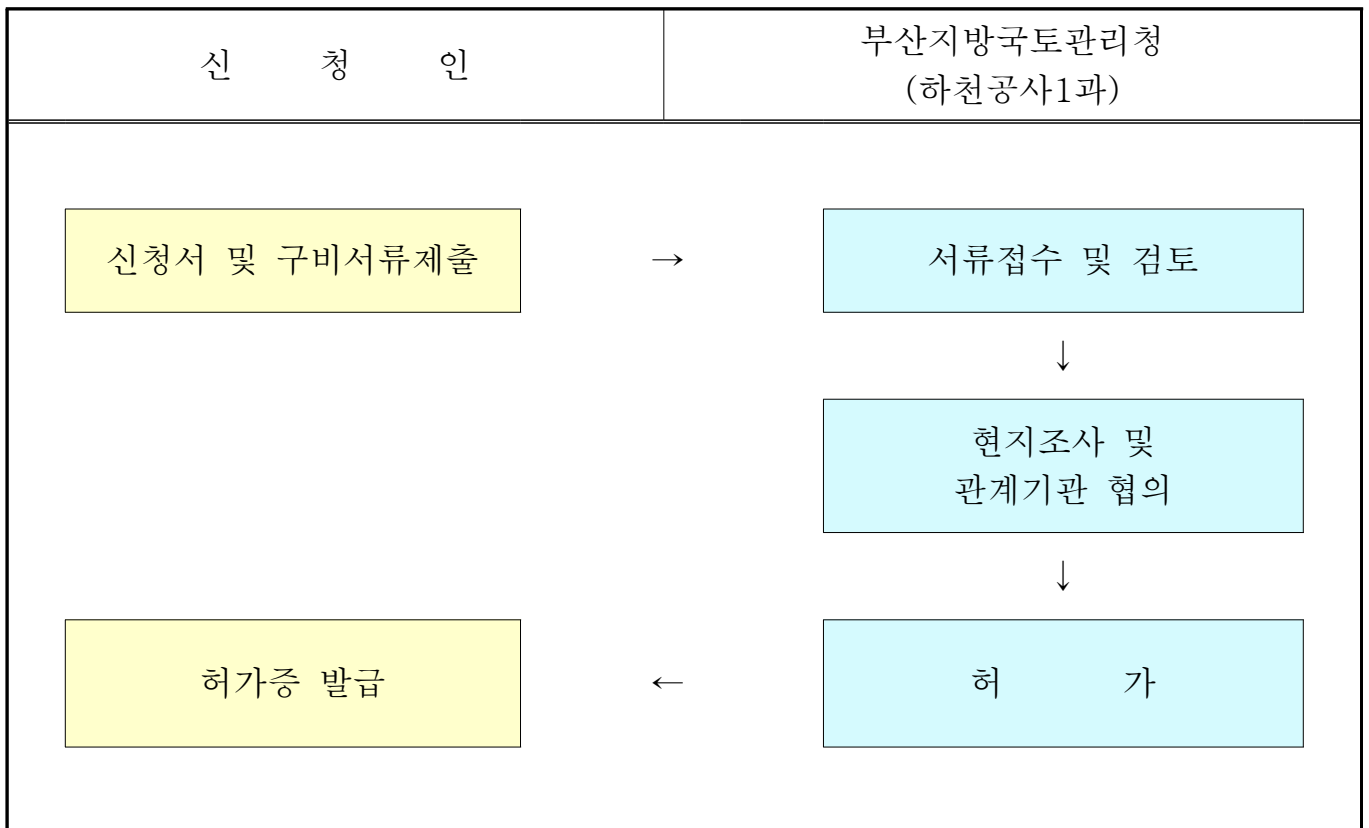
마. 하천 유지·관리상 지장 여부

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 토지소유자, 하천점용에 관한 기득권자의 동의 여부(공증을 필한 것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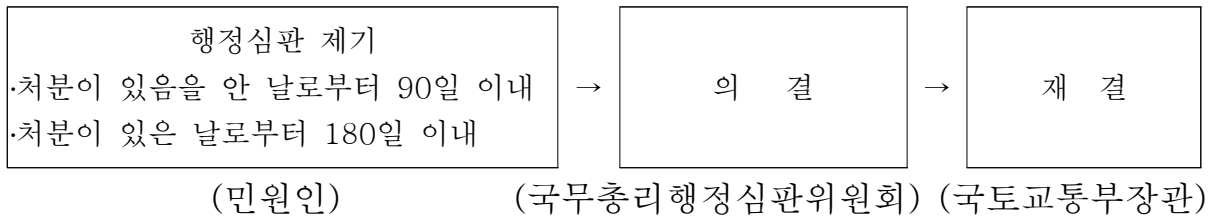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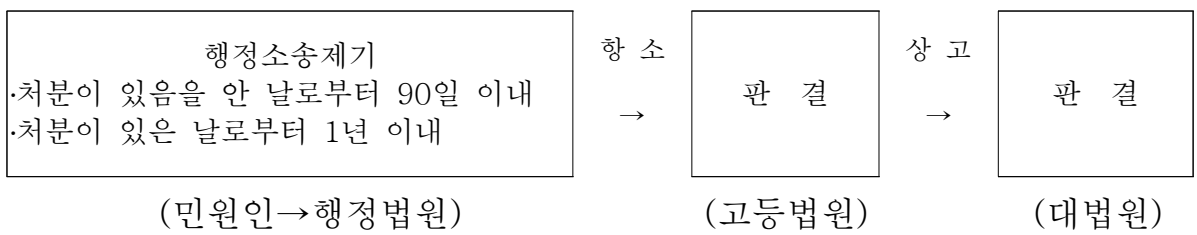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심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 하천점용허가 (변경)신청서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	-----	------	-------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점용 (행위) 개요	하천의 명칭
	점용(행위)위치 (면적 : m²)
	점용(행위)목적
	지구지정현황(하천법제44조)
	점용(행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변경내용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변경)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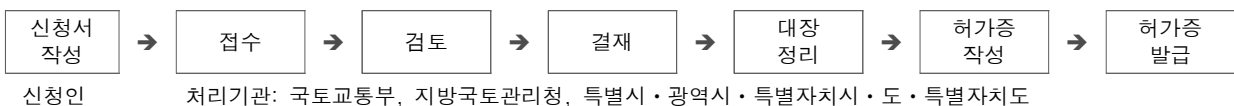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비고	점용목적은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그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변경내용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신청 할 경우에만 적습니다.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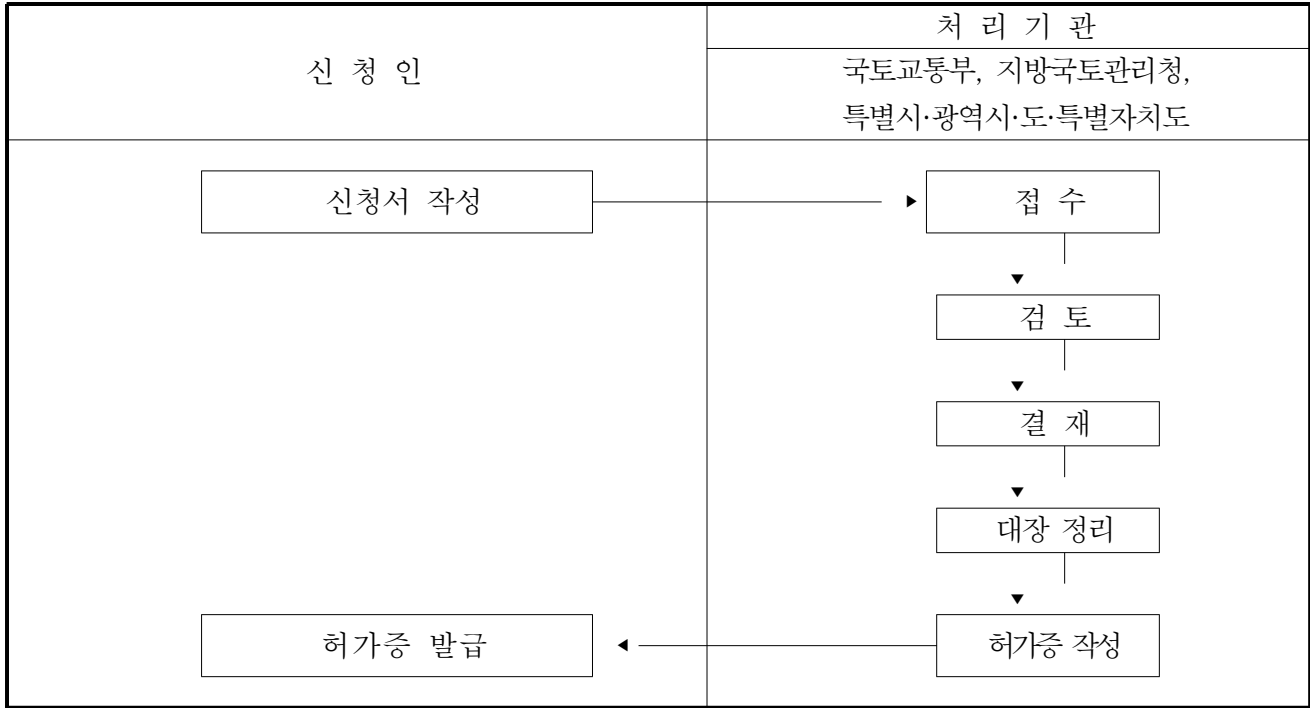
처리절차



처리기관, 처리기간			
점용(행위)의 목적	처리기관		처리기간
	국가하천	지방하천	
토지의 점용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10일
하천시설의 점용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14일
공작물(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축·개축·변경	점용허가:지방국토관리청 기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20일
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신축·개축·변경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60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점용허가:지방국토관리청 기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20일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 산출물의 채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20일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장의 설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20일
식물의 식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5일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20일
선박의 운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12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처리기관, 처리기간 및 허가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점용(행위)의 목적	처 리 기 관		처리기간	허가수수료
	국가하천	지방하천		
토지의 점용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10일	없 음
하천시설의 점용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14일	점용료의 1천분의 1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점용허가: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공작물(댐 및 하구둑만 해당한다)의 신축·개축·변경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60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점용허가: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점용료의 1천분의 1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장의 설치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없 음
식물의 식재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5일	없 음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없 음
선박의 운항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12일	없 음

하천점용허가**[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굴착·성토·절토 등 형질변경]**

1. 근거 법령

종 류 별	하 천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하천점용허가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제33조	제34조	제17조
하천점용허가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형질변경)	제33조	제34조	제17조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허가>

- 1) 하천점용허가신청서 1부.
- 2) 위치도 : 축척 1/25,000 지형도에 위치 표시
- 3) 수리계산서
 - 당해 공작물 설치로 인하여 상,하류측에 미치는 홍수위,유속 및 하상변화 등에 대한 검토서로써 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자원개발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 확인하여야 함.
- 4) 표준구조물도
 - 공작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조물 평면, 정면, 측면도 등을 작성하되 구조물 설치 단면뿐만 아니라 제방, 유로상황 등 주변 하천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 5) 개략공사비산출서
 - 하천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중 하천구역에 해당되는 공사비만 작성하며, 공사비 산출은 정부제정 표준품셈 및 국가계약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등에 의거 산출되어야 함

6)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득하천사용자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타 이해관계인 (어업권자 및 광업권자 등)

7)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형질변경 허가>

1) 하천점용허가신청서 1부.

2) 위치도 : 축척 1/25,000 지형도에 위치 표시

3) 공사설명서

- 공사개요(시설, 공사기간, 사업비, 사업기간등 작성) 및 제방, 호안 등 하천시설물 굴착, 원상복구 계획 설명 요청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득하천사용자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 당해 허가로 인하여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기타 이해관계인 (어업권자 및 광업권자 등)

나. 처리기간 : 20일

다. 원상회복비 예치 (하천법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1) 부과기준

- 하천점용으로 인하여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 점용료의 30/100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형질 변경인 경우 : 원상복구에 드는 실제 비용

2) 납부방법 : 하천법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보증서 또는 현금

3) 기 타 : 원상복구 완료 후 또는 원상회복이 필요 없는 경우 반환

라. 수수료 : 점용료의 1/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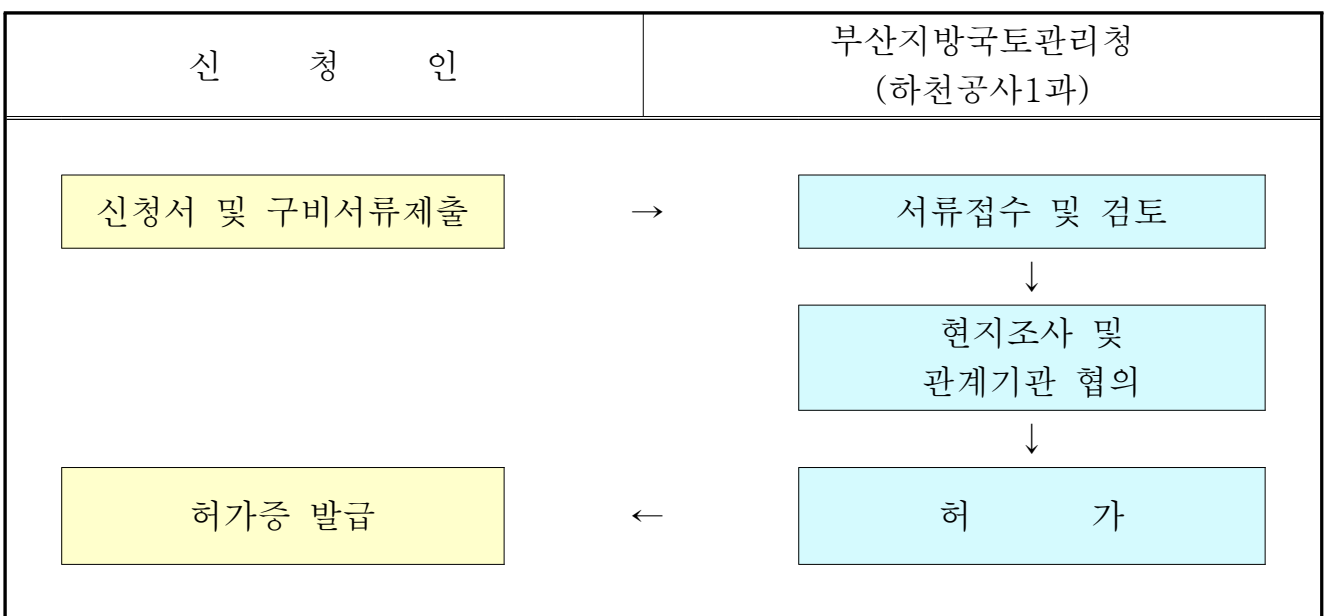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지개량조합 제외

3. 심사기준

- 가. 하천기본계획에 적합 여부
- 나. 최대계획 홍수를 소통시킬 수 있는 충분한 홍수단면적(하폭)의 확보 여부
- 다. 수층작용이 심한 곳에 있어서는 세굴방지를 위한 근고공 설치 여부
- 라. 공작물 설치로 인하여 인근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및 인근주민 또는 영농에 지장 유무
- 마. 공공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 바.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 하천점용에 관한 기득권자)의 동의서 첨부 여부 (공증을 필한 것에 한함)
- 사. 하천시설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조치에 따른 동의 여부
- 아. **공사비 산출이 토목공사 표준품셈 등 적용하여 적절히 산출되었는가의 여부**
- 자. 공기산출이 신청한 내용과 시공방법, 공사, 규모, 시공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것인가의 여부
- 차. 하천시설 기준에 의한 설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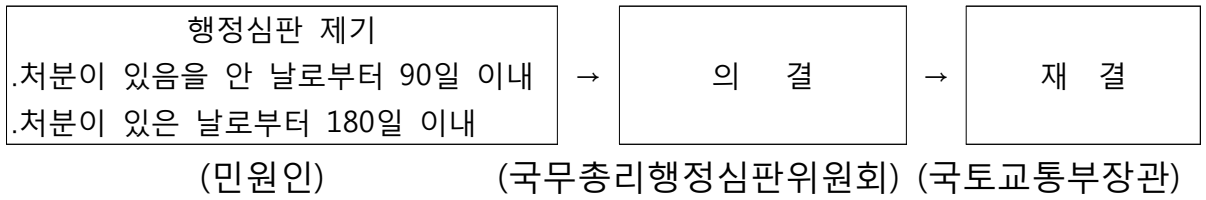
4.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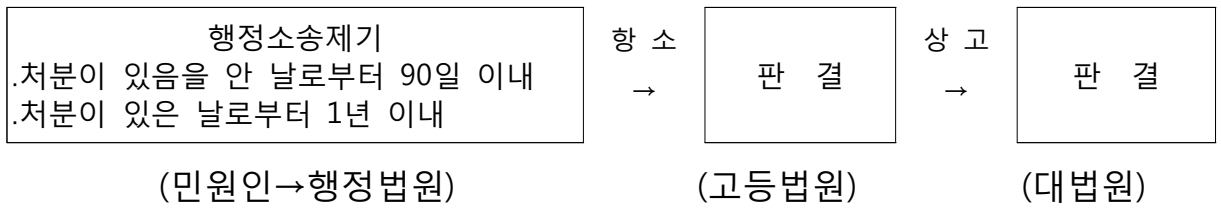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심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 하천점용허가 (변경)신청서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점용 (행위) 개요	하천의 명칭		
	점용(행위)위치		(면적 : m ²)
	점용(행위)목적		
	지구지정현황(하천법제44조)		
	점용(행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변경내용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를 (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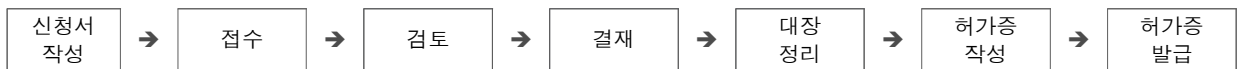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비고	점용목적은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별로 그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변경내용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신청 할 경우에만 적습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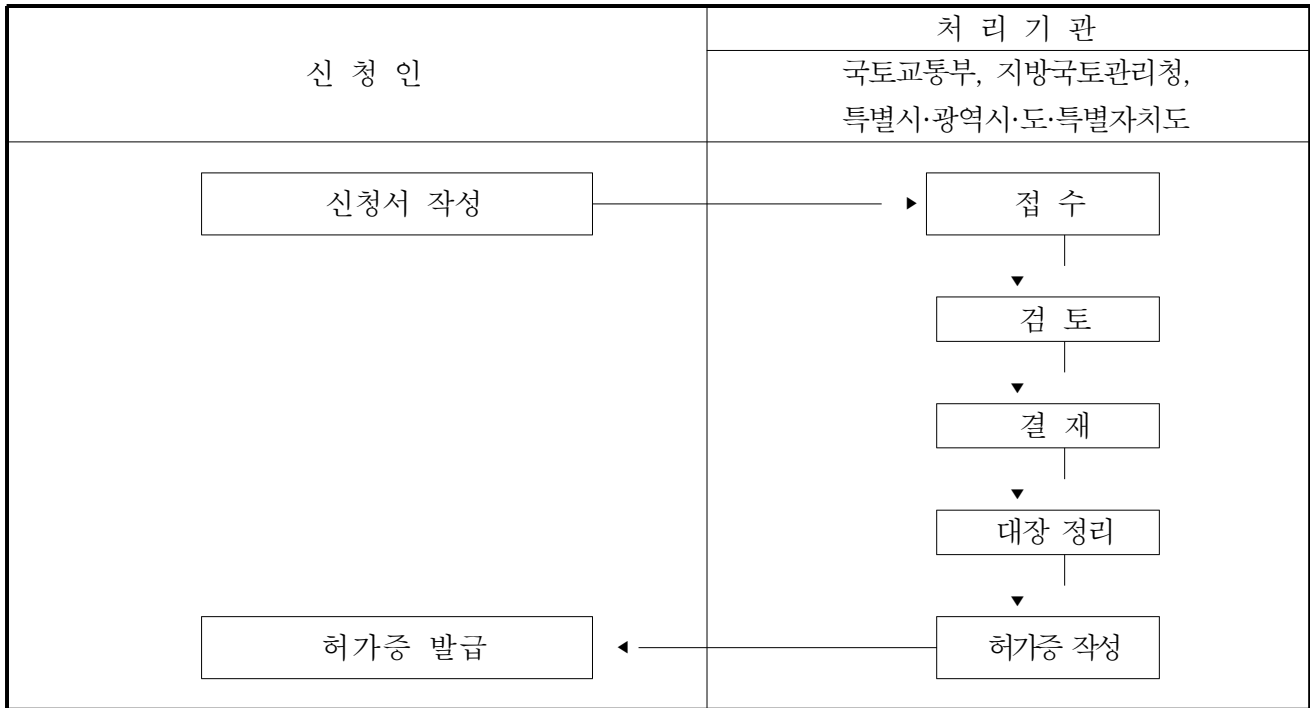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처리기관, 처리기간			
점용(행위)의 목적	처리기관		처리기간
	국가하천	지방하천	
토지의 점용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10일
하천시설의 점용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14일
공작물(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축·개축·변경	점용허가:지방국토관리청 기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20일
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신축·개축·변경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60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점용허가:지방국토관리청 기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20일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 산출물의 채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20일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장의 설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20일
식물의 식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5일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20일
선박의 운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12일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처리기관, 처리기간 및 허가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점용(행위)의 목적	처 리 기 관		처리기간	허가수수료
	국가하천	지방하천		
토지의 점용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10일	없 음
하천시설의 점용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14일	점용료의 1천분의 1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점용허가: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공작물(댐 및 하구둑만 해당한다)의 신축·개축·변경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60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점용허가: 지방국토관리청 기타: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점용료의 1천분의 1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장의 설치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없 음
식물의 식재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5일	없 음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20일	없 음
선박의 운항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12일	없 음

1. 근거 법령

종 류 별	하 천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하천공사시행허가	제30조	제29조	제14조

2.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구비서류 제출

- 1)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 1부.
- 2) 위 치 도 : 축척 1/25,000 지형도에 위치 표시
- 3) 개략설계도
: 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 1/5,000의 계획평면도 및 표준단면도와 면적을 표시한 도면
- 4) 개략공사비산출서
: 하천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중 하천구역에 해당되는 공사비만 작성하며, 공사비 산출은 정부제정 표준품셈 및 국가계약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등에 의거 산출되어야 함.
- 5)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나. 처리기간 : 20일

다. 소요공사비 납부(하천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 1) 부과기준 : 공사비에 상당하는 금액
- 2) 납부방법 : 현금, 보증서 또는 채권

라. 수수료 : 허가 시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지개량조합 제외

3. 심사기준

가. 당해 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을 고려한 하천관리상 지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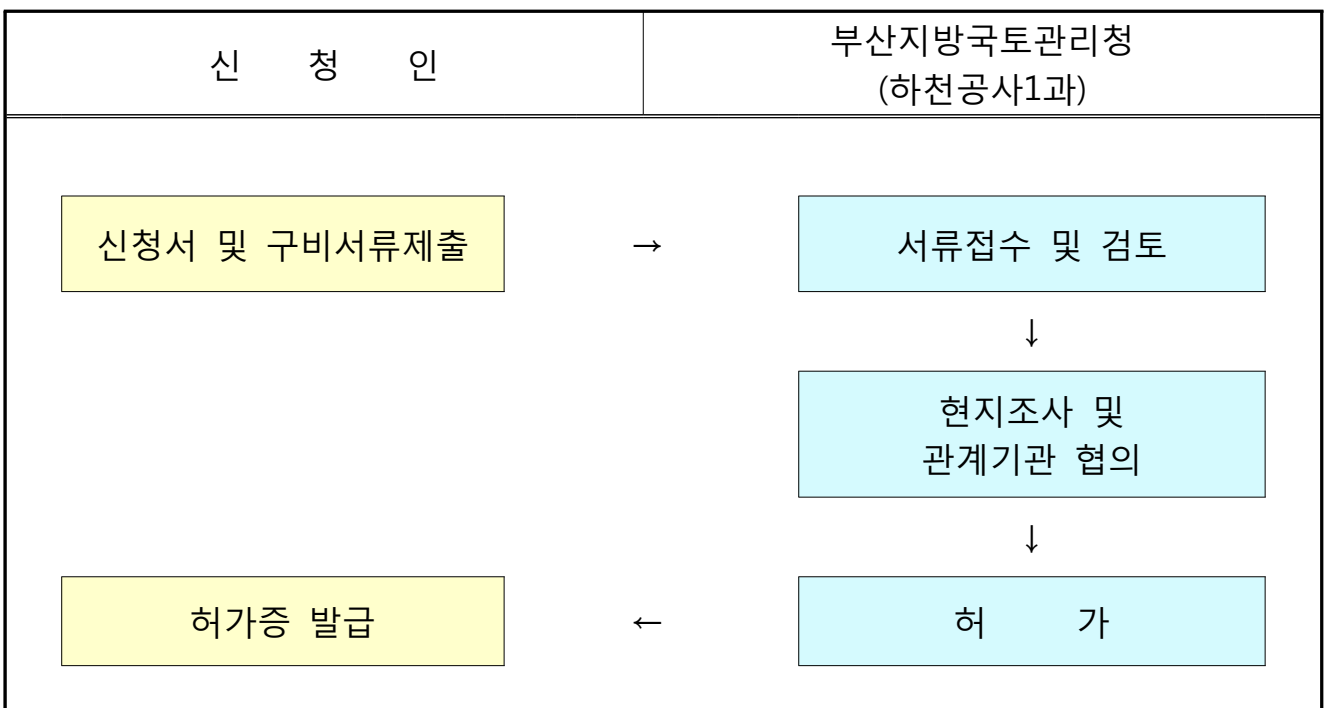
- 1) 하천기본계획에 적합 여부
- 2) 하류 및 인근 기득수리권에 미치는 영향 유무
- 3) 최대계획 홍수를 소통시킬 수 있는 충분한 홍수단면적(하폭)의 확보 여부
- 4) 제체는 유속에 붕괴되지 않을 충분한 단면의 확보 또는 비탈면의 보호조치 여부
- 5) 수충작용이 심한 곳에 있어서는 세굴방지를 위한 근고공 설치 여부
- 6) 공작물 설치로 인한 인근지대의 침수 예방시설 설치 여부

나. 하천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조치함에 따른 동의 여부
 다. 공사비산출이 토목공사 표준품셈표를 적용하여 산출되었는가의 여부
 라. 공기산출이 신청한 내용과 시공방법, 공사, 규모, 시공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진 것인가의 여부

마. 하천시설 기준에 의한 설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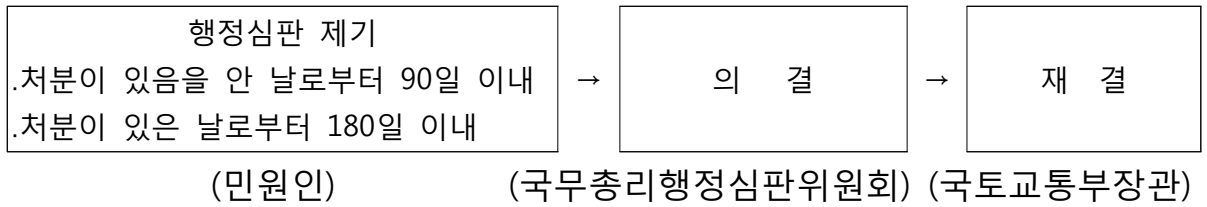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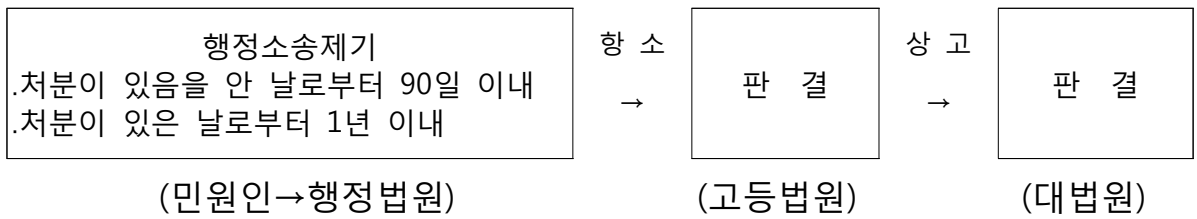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심판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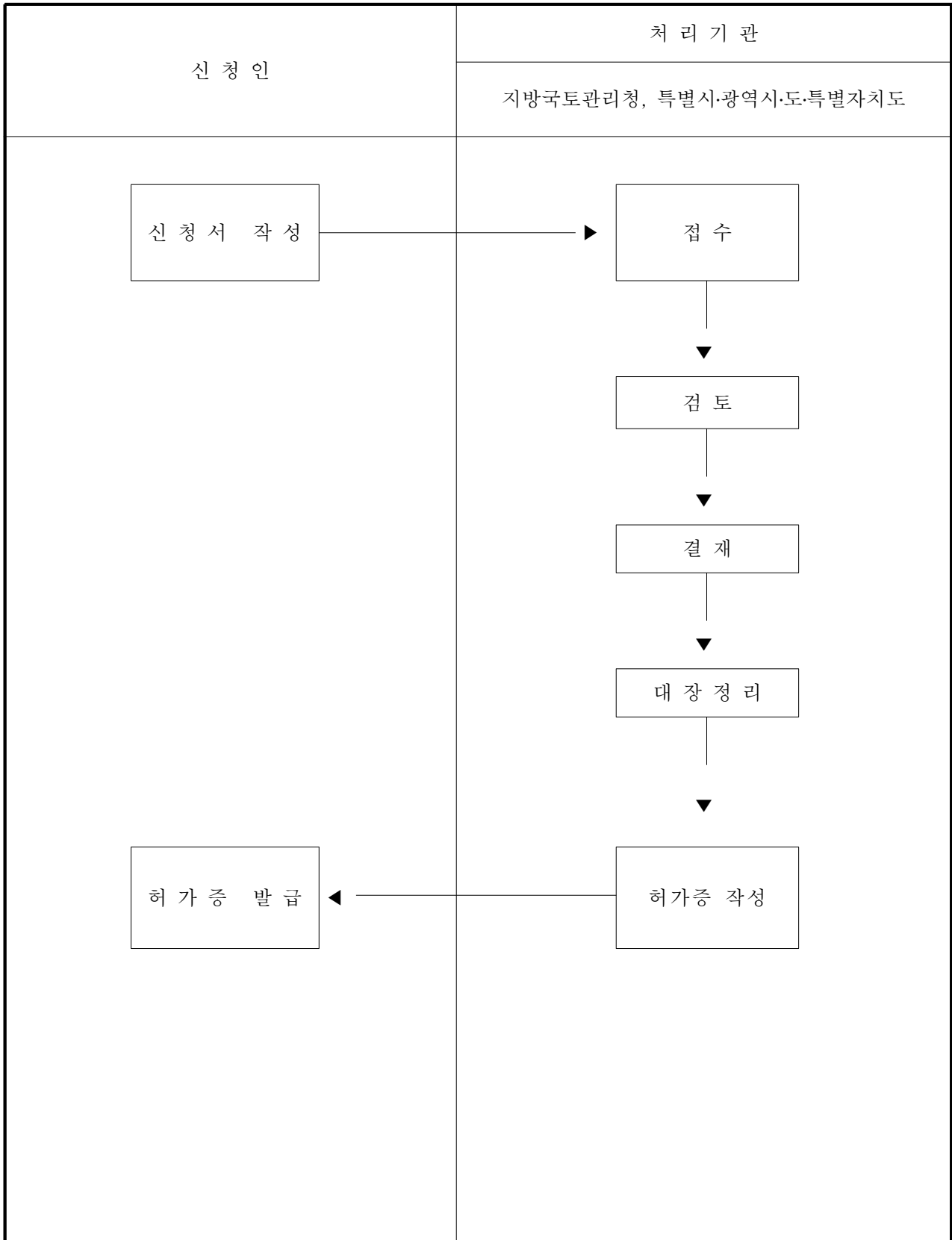


2) 행정소송 제기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4

그 밖의 하천 관련 민원

1. 근거 법령

종 류 별	하 천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실시계획(변경) 인 가 신 청	제30조	제31조	제15조
공 사 착 수 신 고	-	-	-
준 공 인 가 신 청	제30조		제16조
하천점용허가기간 연 장 허 가	제33조		제19조
원상회복의무면제 신 청	제48조		제26조

2. 민원의 종류

가.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 제출하는 민원

1) 실시계획(변경)인가신청(해당되는 시설물에 한함) (처리기간 : 20일)

- ①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
- ② 축척1/25,000이상의 위치도 및 사업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 ③ 실시설계도서 (2이상 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공구별로 작성)
- ④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 투자계획서
- ⑤ 예정공정표
- ⑥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 ⑦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 한함

2) 공사착수신고 (처리기간 : 즉시)

- ① 공사착수신청서.
- ② 월별예정공정표

3) 준공인가신청 (처리기간 : 10일)

- ① 준공인가신청서
- ② 공사비용정산서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하천시설의 명세서
- ④ 국가에 귀속되는 하천구역편입토지에 관한 조서
- ⑤ 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
- ⑦ 준공사진

나. 하천점용 허가기간 종료 시 제출하는 서류

- 1)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허가 신청
- 2)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해당되는 시설물에 한함)

다. 기타

- 1) 권리·의무 승계 신고
- 2) 토지매수청구
- 3) 폐천부지 교환(양여) 신청

3. 허가 이후 업무처리 절차



준공인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준공내용	하천의 명칭
	위치
	공사 개요
	공사기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일간) </div>
	준공연월일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년 월 일 </div>

「하천법」 제30조제7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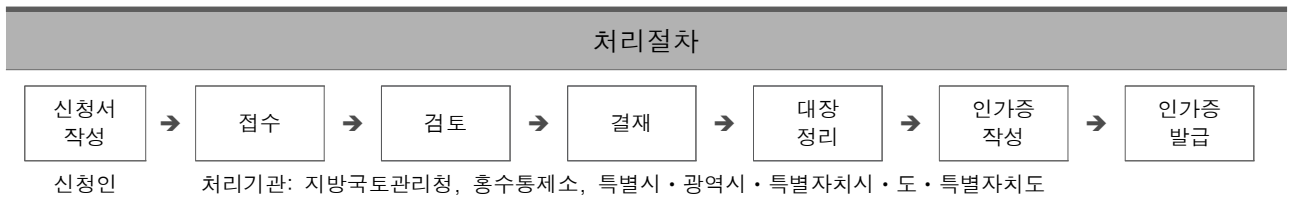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토관리청장 · 홍수통제소장

귀하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비정산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하천시설의 명세서 3.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조서 4. 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 5. 폐천부지등의 발생명세 6. 준공 사진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하천점용허가기간
[]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장신청서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허가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	제 호
점용(행위) 위치		
점용(행위) 내용	[점용(행위) 면적: m ²]	
점용(행위)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연장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연장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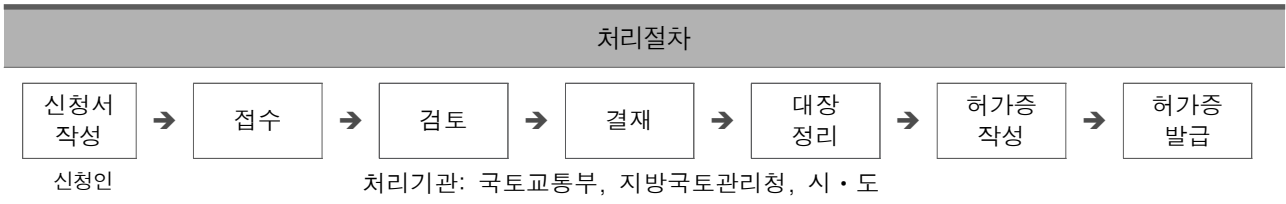
「하천법」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기간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8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div style="text-align: right;">(전화번호: _____)</div>	
허가연월일 및 번호	년 월 일	제 호
하천의 명칭 및 위치		
허가내용		
공정률		
실효(폐지) 연월일	년 월 일	
실효(폐지) 원인		
철거물의 종류 및 개요		
신청 사유		

「하천법」 제48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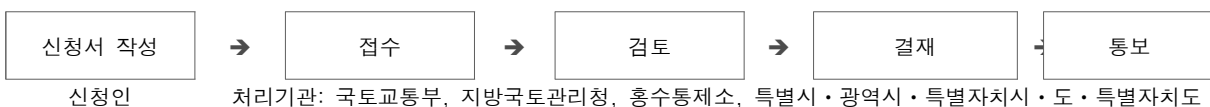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토지등 매수청구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매수청구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div style="text-align: right;">(전화번호:)</div>							
토지에 관한 사항	번호	①소재지	②지번	③주택지 표시	지목	⑥면적 (㎡)	⑦용도지역 · 용도지구	⑧이용 현황
					④법정	⑤현실		
	1							
	2 3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에 관한 사항	번호	⑨종류	⑩공작물 등의 내용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⑪종류	⑫내용		
	1							
	2 3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토지의 권리에 관한 사항	번호	⑬종류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				*특기사항	
			⑭존속기간	⑮잔존기간	⑯건고 · 비건고성	⑰지대 (연액:원)		
	1							
	2 3							
*소유권 외의 권리자의 성명 · 주소								

「하천법」 제7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등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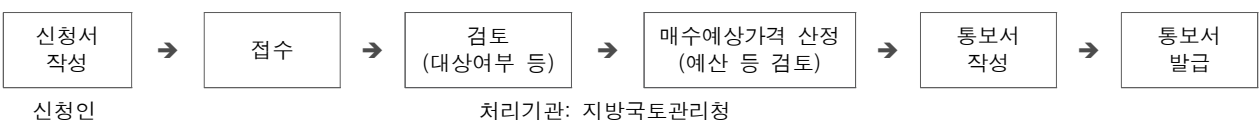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토관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하천관리청 확인사항	
첨부서류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토지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번호에 대응하여 매 필지별로 적습니다.
2. ④, ⑤란에는 전·답·잡종지·임야 등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3. ⑩란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연면적·구조·사용연수 등을 적고, 입목의 경우에는 수종·본수·수령 등을 적습니다.
4. ⑫란에는 권리의 존속기간·임료 등을 적습니다.
5. *란에는 담보권설정(금액·기간·권리자 등) 등의 사항을 적습니다.
6. *란의 권리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폐천부지 등 교환(양여)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위치	
	하천명	
	하천으로 된 면적	
	폐천부지 등의 면적	
	폐천(예정)연월일	
교환(양여)신청면적		

「하천법」 제8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천부지 등의 교환(양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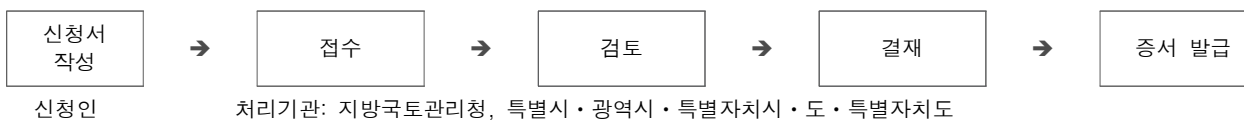
지방국토관리청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 확인사항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수수료 없음
	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 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구적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교환의 경우로서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공사비정산서(시·도지사가 양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지적도 2.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토지의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등본	

처리절차



1. 근거 법령

종 류 별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품질검사	제60조	제97조	제56조

2. 제출 사항

가. 품질검사의뢰서 1부.

나. 품질시험·검사 대상 시료

* 시료 및 시험의 종류에 따라 제출할 시료의 양 상이하므로, 부산청 홈페이지-공지사항 - ‘품질시험수수료 및 처리기한 알림’ 참고

3. 유의사항 안내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의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뢰 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서 제출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 : 시험수수료 납부영수증 작성 시 필요

※ 작성 후 파기

라. 품질검사 시험은 시험수수료 납부 확인 후 실시

4. 처리기간, 수수료 : [국토지식정보] - [품질관리정보]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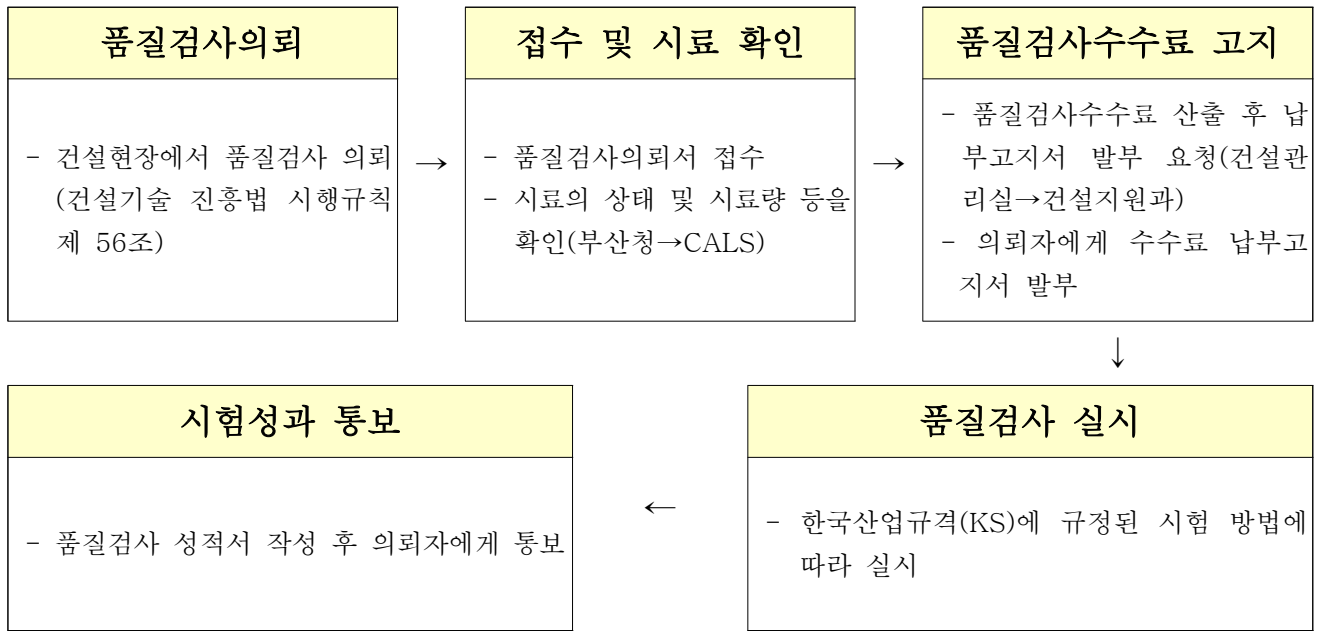
5. 처리주무부서, 경유, 협의기관 안내

가. 품질검사 의뢰서 접수 : 운영지원과 민원실

나. 품질검사 수수료 납부영수증 발급 : 건설지원과

다. 품질검사 실시 ~ 결과 통보 : 건설관리실

6. 업무처리 흐름도



1. 근거

-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 설치·운영 요령」
* 건설안전과-1249호('12.03.16)

2. 접수방법

-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문서, E-mail, Fax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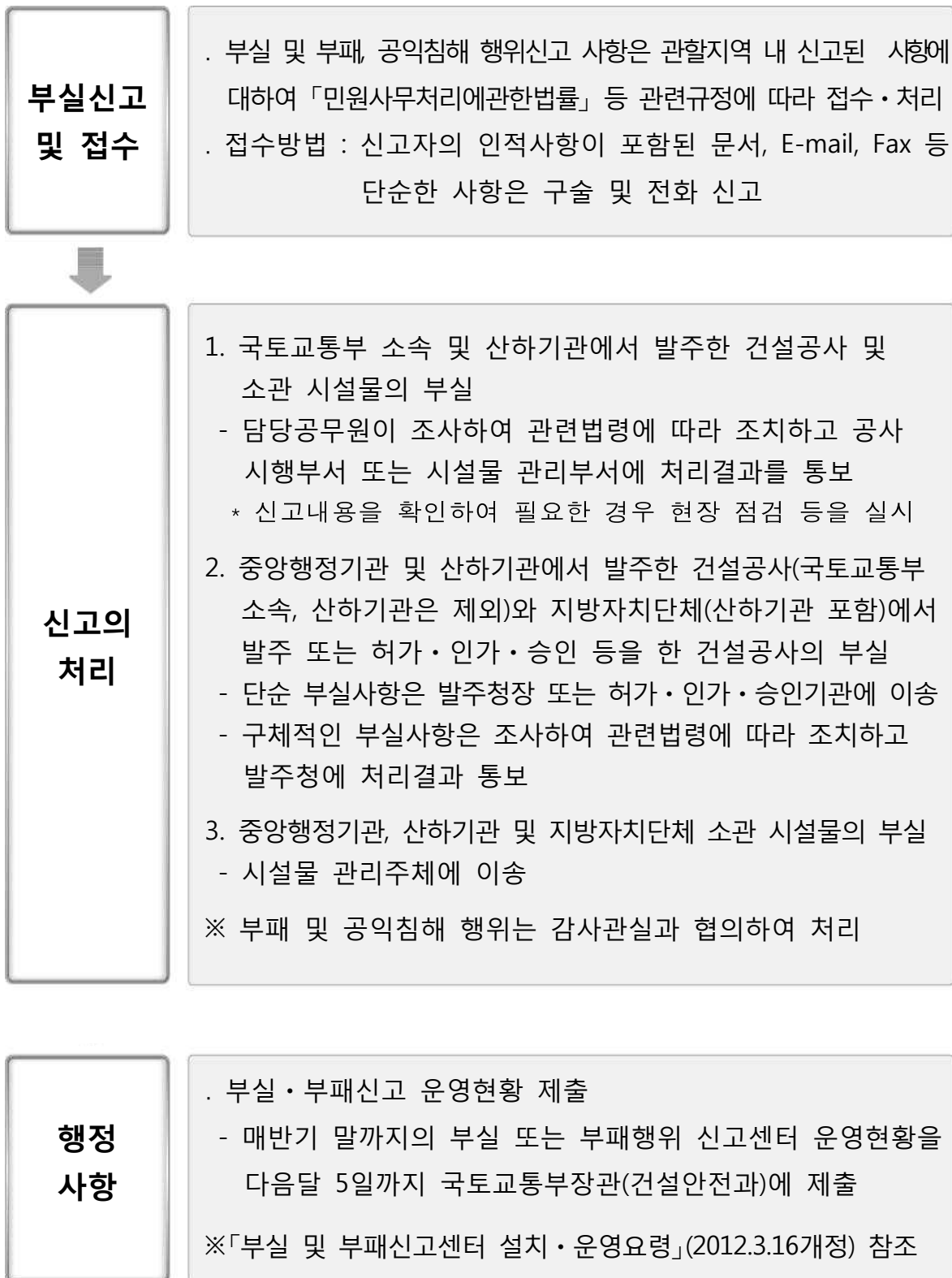
3. 신고의 처리

- 국토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및 소관 시설물의 부실
 - 담당공무원이 조사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공사시행부서 또는 시설물 관리부서에 처리결과를 통보
 -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국토교통부 소속 및 산하기관은 제외)와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에서 발주 또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의 부실
 - 단순한 부실사항은 발주청장 또는 허가·인가·승인기관에게 이송
 - 구체적인 부실사항은 조사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발주청에 처리결과 통보
 - 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물의 부실
 - 시설물 관리주체에 이송
- *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는 감사관실과 협의하여 처리

3. 처리기간

-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기한내 미처리할 경우 1월의 범위 내 연장 가능)

4. 업무처리 흐름도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민원처리기준표

민원명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신 청 방 법	수수료	처 리 부 서	법정 신청서
취하원	즉시	1. 민원 취하서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없음	소관부서	없음
실적증명(공사, 제조)	즉시	1.증명원서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현장제출	개별법령에 의함	소관부서	없음
경력확인	즉시	1. 경력확인서	방문 또는 우편	없음	소관부서	경력확인서 (건설기술 기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경력증명	즉시	1.신청서	방문, 우편, 전화, FAX,	없음	운영지원과	없음
확인	즉시	1.확인서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없음	소관부서	없음
질의	7일 14일	1.확인서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없음	소관부서	없음
건의	14일	1.건의서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없음	소관부서	없음
고충민원	7일	1.진정서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없음	소관부서	없음
건설공사기성실 적증명	즉시	1.증명신청서	인터넷 방문 우편	없음	관 리 국 건설지원과	건설공사기성 실적증명신청 서(건설산업 기본법 시행 규칙 : 별지 서식 19호)

민원명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신 청 방 법	수수료	처 리 부 서	법정 신청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재생 계획) 승인	30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 설명서 포함)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4. 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서 . 5. 기존 공장등의 명세서 6. 토지등의 보상 및 이주 대책 . 7. 공공시설물등의 무상귀속, 대체 계획서 8. 귀속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 내역서 및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8. 산업단지개발대행계획서 (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9. 도시계획결정서류 및 도면 (자체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10. 환지계획서 (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 11. 문화재보존대책 12. 피해영향조사서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에 한함) 	인터넷 방문 우편	없음	관 리 국 건설지원과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재생시행 계획)승인신청서(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 별 지서식 9호
산업단지개발 사업 준공인가	30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 포함) 2. 지적측량성과도 3. 개발토지·시설등의 처분계획서 4.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도서와 도면 5. 환지계획서 및 신·구지적 대조도 (환지의 경우에 한함) 6. 취득 또는 귀속될 매립지130 내역서 (공유수면매립에 한함) 	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 없음	관 리 국 건설지원과	준공인가신청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시행 규칙 : 별지 서식 12호

민원명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신 청 방 법	수수료	처 리 부 서	법 정 신청서
산업단지(개발 사업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 기간 연장	10일	1. 위치도. 2. 신청기간연장사유서	인터넷 방문 우편	없음	관 리 국 건설지원과	산업단지개발 사업(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기간 연장신청서(산 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국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도로·구거·하천·유 지·제방 및 그 부 속시설에 한함)	20일	1. 위치도(일부 면적 신청할 경우, 사용 위치 및 면적 산정)	인터넷 방문 우편	없음	관 리 국 보상과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 대 부, 매수)신청 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별 지서식 1호)
국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 (도로·구거 제외)	20일	1. 위치도(일부 면적 신청할 경우, 사용 위치 및 면적 산정)	인터넷 방문 우편	없음	관 리 국 보상과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대부, 매수)신청서(국 유재산법 시행 규칙 : 별지서 식 1호)
국유재산 매 장 물 발굴승인	14일	1. 매장위치를 표시하는 도면 2. 작업계획서 1부. 3. 사업자금조달계획서 1부. 4. 소요경비명세서 1부. 5. 재정보증(2인) 또는 이행보증 보험증권 1부.	인터넷 방문 우편	없음	관 리 국 보상과	

민원명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신 청 방 법	수수료	처 리 부 서	법정 신청서
도로점용 연결 허가 사전심사 신청서	7일	1. 위치도 2. 현장사진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없음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없음
도로 등의 연결허가	21일	1. 연결계획서 1부. 2. 연결도등 설계도면 1부.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1부.	인터넷 방문 우편 FAX	1,000원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도로 등의 연 결허가신청서 (도로와 다 른 시설의 연 결에 관한 규 칙 : 별지서 식 1호)
도로점용허가 신청 (일반점용, 일시 점용, 공작물설 치, 도로굴착, 선전탑설치, 아 취 육교사용)	7일	1. 설계도면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 하는 경우에 한함)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 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 1부. 4. 도로법시행령 제56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 심의회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1부.	인터넷 방문 우편 FAX	1,000원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 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
도로점용공사 (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	7일	1. 설계도면 1부.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없음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도로점용공사 (원상회복공 사) 완료확인 신청서(도로 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2호)

민원명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신 청 방 법	수수료	처 리 부 서	법정 신청서
도로점용공사 (원상회복공사) 준공기한 연장신청서	5일	없음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없음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없음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7일	없음	인터넷 방문 우편 FAX	1,000원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 청서(도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 호)
도로점용 (연결)허가 이의신청서	5일	없음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없음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없음
도로점용 사업 계획서 제출	60일	1. 교통소통대책 1부 2. 먼지발생방지대책 1부 3. 안전사고방지대책 1부 4. 도로시설유지대책 1부 5.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 대책 1부(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함)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없음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도로점용 사 업계획서(도 로법 시행규 칙 : 별지서 식 30호)
도로공사 시행 허가 신청	15일	1. 사업계획서 1부. 2. 설계도서 1부. 3.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4. 공사비 산출서 5. 도로편입토지 세목조서	인터넷 방문 우편 FAX	공사비 (용지 및 공사비 제외)의 1/1,000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공사시행 허 가신청서(도 로법 시행규 칙 : 별지서 식 11호)

민원명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신 청 방 법	수수료	처 리 부 서	법 정 신청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7일	1. 권리·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2. 권리·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권리·의무 양도의 경우에 한함)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에 관한 증명서(상속받은 경우)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없음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권리·의무 승 계신고서(도 로법 시행규 칙 : 별지서 식 46호)
도로점용허가 변경	7일	1.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도면 등	인터넷 방문 우편 FAX	1,000원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도로법 시행 규칙 : 별지 서식 26호)
도로등의 연결 허가변경 신청서	10일	1.변경내용 관계도서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없음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도로 등의 연 결허가변경신 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 별지 서식 3호)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	5일	1. 허가증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없음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 (도로법 시행 규칙 : 별지 서식 48호)

민원명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신 청 방 법	수수료	처 리 부 서	법정 신청서
하천점용허가 (토지의 점용)	10일	1.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인터넷 방문 우편	없음	하 천 국 하천공사1 과	하천점용허 가 신청서(하천법 시행 규칙 : 별지 서식 2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시설의 점용)	14일	1.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 터 6천분의1까지)	인터넷 방문 우편	없음	하 천 국 하천공사1 과	하천점용허 가 신청서(하천법 시행 규칙 : 별지 서식 29호)
하천점용허가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20일	1. 위치도(축척1/25,000) 1부. 2. 수리계산서 3. 표준구조물도 1부. 4. 개략공사비산출서 1부. 5. 이해관계인 동의서 (하천 예정지 및 연안구역 내에서는 제외) 1부.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지질조사서 (댐설치 경우에 한함) 1부.	인터넷 방문 우편	공사비 (보상비 제외)의 1/1,000	하 천 국 하천공사1 과	하천점용허 가 신청서(하천법 시행 규칙 : 별지 서식 29호)
하천점용허가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및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20일	1. 위치도(축척1/25,000) 1부. 2. 공사설명서 1부. 3. 이해관계인 동의서 (하천 예정지 및 연안구역 내에서는 제외) 1부.	인터넷 방문 우편	공사비 (보상비 제외)의 1/1,000	하 천 국 하천공사1 과	하천점용허 가 신청서 (하천법 시행 규칙 : 별지 서식 29호)

민원명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신 청 방 법	수수료	처 리 부 서	법정 신청서
하천예정지, 홍수관리구역안 에서의 행위허가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토 지 굴착·성토·절 토 그 밖의 형질 변경)	20일	<공작물신축개축> 위치도, 수리계산서, 표준구조 물도, 개략공사비산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토지형질변경> 위치도, 공사설명서 이해관계인 동의서	인터넷 방문 FAX 우편	공사비 (용지비, 보상비 제외) 1/1000	하 천 국 하천공사1 과	하천예정지, 홍수관리구역 행위허가 (하천법 시행 규칙 : 별지 서식 29호)
하천예정지,홍 수관리구역안 에서의 행위허가 (죽목의 식재)	20일	1.위치도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없음	하 천 국 하천공사1 과	하천예정지, 홍수관리구역 행위허가(하 천법 시행규 칙 : 별지서 식 29호)
하천공사허가	20일	1. 위치도 1부. 2. 수리계산서(하천장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한다) 1부. 3. 개략설계서(축적5천분의 1의 도면에 재방의 중심선 을 표시한 계획단면도, 표준 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1부. 4. 개략공사비산출서 1부. 5.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공사비 (용지비 및 보상비 제 외) 1/1,000	하 천 국 하천공사1 과	하천공사허가 신청서 (하 천법 시행규 칙 : 별지서 식 24호)
하천점용허가 (하천예정지· 홍수관리구역안 에서의 행위허가) 기간 연장허가	5일	없음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없음	하 천 국 하천공사1 과	하천점용허가 기간 및 행위 허가기간 연 장신청서 (하천법 시행 규칙 : 별지 서식 32호)

민원명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신 청 방 법	수수료	처 리 부 서	법정 신청서
하천공사 실시 계획 (변경)인가	20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천공사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1부. 2.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 이상) 및 사업구역이 표시된 실측지적평면도 1부. 3.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사업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작성) 1부. 4. 자금조달계획서 및 연차별 투자계획서 1부. 5. 예정공정표 1부. 6. 수용·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1부. 7.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서」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 1부.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없음	하 천 국 하천공사1 과	실시설계인가 (변경인가) 신청서(하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하천 점·사용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8일	없음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없음	하 천 국 하천공사1 과	원상복구의무 면제신청서(하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0호)

민원명	처리 기간	구 비 서 류	신 청 방 법	수수료	처 리 부 서	법정 신청서
토지매수청구	6월	1. 토지매수청구서 1부.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없음	하천국	토지매수청구서(하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제54호)
폐천부지 교환 (양여) 신청	20일	1. 위치도(축척이 5만분의 1인 것,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 1부. 2. 구적도 1부.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교환의 경우로서 신청인이 경합하는 때) 1부. 4. 공사비정산서(시·도지사가 양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1부.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없음	하천국, 보상과	폐천부지 등 교환(양여) 신청서(하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5호)
품질시험·검사 의뢰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 국토 교통부고 시 제 2013-357 호에 따라 처리기간 산정	1. 품질검사·의뢰서 1부.	방문 우편 팩스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 국토교 통부고시 제 2013-357 호에 따라 수수료 산정	건설 관리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 지 제48서 식]

※ 행정자치부 고시 2016 민원처리기준표 참조